

발 간 등 록 번 호

11-1790365-100021-01



전 분야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안내서

2025. 0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발 간 등 록 번 호
11-1790365-100021-01

전 분야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안내서

2025. 0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전 분야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안내서

안내 사항

발간 목적

본 안내서는 2025년 3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전송요구대상정보, 전송 요구의 방법 및 전송 방법 등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주요 내용에 관한 사항과 정보전송자, 정보수신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무, 조치 사항 등 법령 및 고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제·개정 이력

일자	주요 내용
'25. 4.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 안내

재검토 기한

안내서의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발간일(2025년 04월)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함) 적정성을 재검토할 예정이며,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른 개선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저작권 표시

본 안내서 내용의 무단 전재를 금하며, 가공·인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 분야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안내서」 2025.04.

문의처

안내서 내용 관련 문의는 소관 법령별로 다음의 연락처로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 전략기획팀(☎02-2100-3172)
- 개인정보관리 전문가관 지정, 일반수신자 등재 :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 서비스혁신팀(☎02-2100-3185)
-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 :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 인프라팀(☎02-2100-3191)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5조의4 등

※ 법령 최신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개인정보 보호 법령 안내서 최신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 개인정보 포털**을 참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www.pipc.go.kr) : 법령 > 법령정보 > 안내서

**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자료 > 자료보기 > 안내서

C O N T E N T S

I

개요

1

II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보호법 제35조의2)

9

1. 정보전송자 기준 및 의무 11
2. 일반수신자 기준 및 의무 등 19
3. 전송요구대상정보 28
4. 전송 요구의 방법 및 절차 39
5. 전송 방법 및 절차 등 44
6. 전송 요구의 변경·철회, 거절 및 전송 중단 53

III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보호법 제35조의3)

59

1.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 및 지정요건 61
2.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절차 75
3.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업무 중지 또는 폐지 92
4.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취소 절차 96
5.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금지행위 100

IV

개인정보 전송 관리 및 지원(보호법 제35조의4)

108

1. 보호위원회의 관리·감독 110
2.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 116

V

전송 요구 관련 수수료

125

부록

1.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 및 이행 절차 133
2. 개인정보 전송요구서 서식 152
3. 분야별 전송요구대상정보 정의서 154
4.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요건 세부기준 159





I

개요

I 개요

1 목적

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안내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3.3월)으로 정보주체의 일반법적 권리로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도입됨에 따라 전 분야 마이데이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정보주체가 본인에 대한 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전송하여 관리하고 활용하는 제도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년) 및 「전자정부법」('21년) 개정을 통해 금융·공공분야에 대한 마이데이터가 개별적으로 도입되었음

- 이에 따라 정보전송자 및 정보수신자의 기준, 전송 방법, 전송 요구 및 전송 요구의 변경·철회, 거절·중단 방법 등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관련 법령은 '1. 개요 - 3. 관련 법령 현황' 참고

나. 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 행사 지원

- 정보주체가 자신의 명시적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권리 행사의 구체적 방법과 절차를 제시하였습니다.
- 또한,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가 전송 요구를 언제든지 변경·철회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통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전송 및 활용 지원

- 개인정보를 전송받을 수 있는 정보수신자가 갖춰야 하는 시설 및 기술, 보호체계, 금지행위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및 보호를 위한 업무 기준을 제시하고, 마이데이터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 또한, 그간 기업·기관별 칸막이에 가로막혔던 다양한 정보를 안전하게 전송받아 정보주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2 추진 경과

■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은 '21년 6월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정책」을 통해 전 분야 마이데이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되었습니다.

- 이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는 '23년 3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신설하여 전 분야 마이데이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후 '23년 8월에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을 통해 10대 중점 분야 선정 등 추진방향 및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 |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추진경과

-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정책」('21.6.11. 관계부처 합동)
 - 전 분야 및 분야별 마이데이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3.3.14. 공포, '25.3.13. 시행)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신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도입) 전송요구권 행사 지원, 개인정보의 관리 분석 등의 업무 수행
-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23.8.17. 관계부처 합동)
 - 마이데이터 10대 중점 추진분야 선정 및 단계별 추진방안 등 국가 마이데이터 추진전략 마련

3 적용 대상 및 범위

가. 적용 대상

■ (정보주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정보주체라면 누구나 권리 행사의 주체가 됩니다.

■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따른 정보전송자 기준에 해당하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에 따른 전송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정보전송자와 정보수신자는 안전한 방식의 전송 방식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정보전송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제1항 및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또는 제3자(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일반수신자)에게 전송하는 자를 말합니다.
- (정보수신자) 정보주체의 제3자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송받을 수 있는 자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일반수신자를 말합니다.

나. 적용 범위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 전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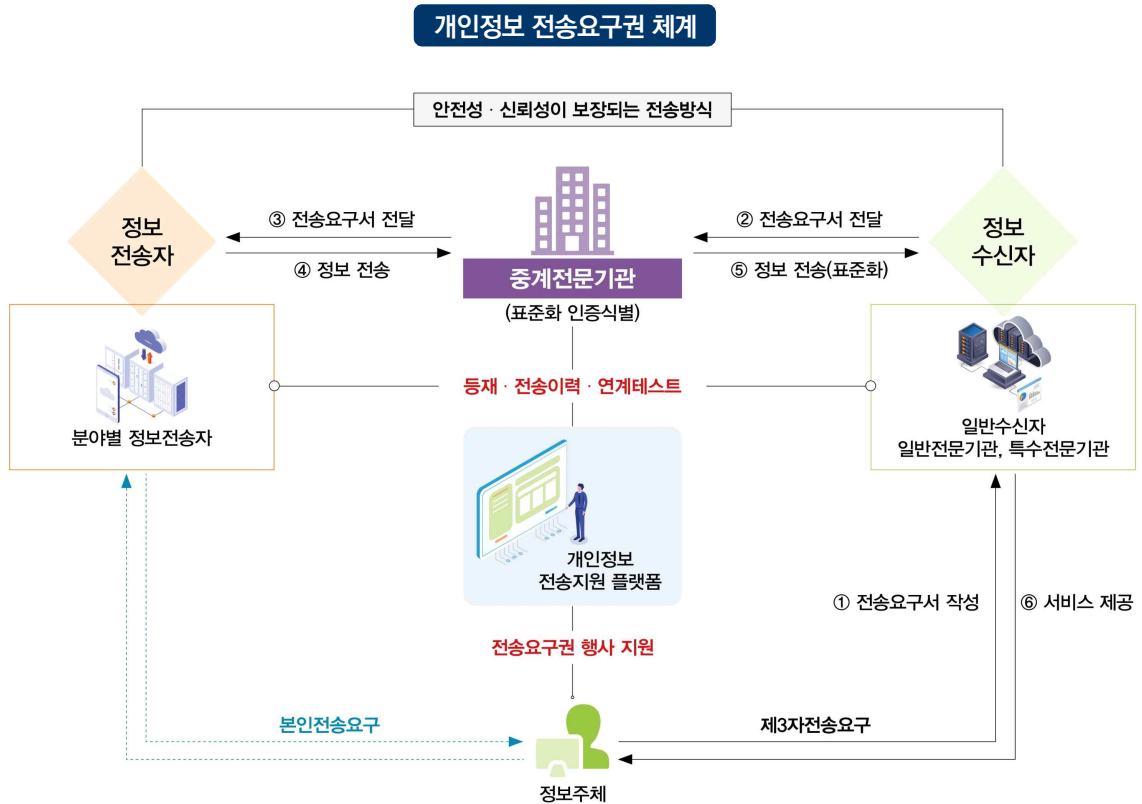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부터 정보의 전송 및 정보수신자의 전송받은 정보의 처리까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에 따른 전 과정에 적용됩니다.

- 또한, 정보전송자 및 정보수신자 등에 대한 보호위원회의 관리·감독 및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 등 사후 관리 전반에 걸쳐 적용됩니다.

4 관련 법령

구분	관련법령
1	개인정보 보호법 (이하 '보호법') (제35조의2~제35조의4) (시행일 : 제35조의2('25.3.13.), 제35조의3('24.3.14.), 제35조의4('23.6.14.))
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 (제42조의2~제42조의16) (시행일 : '25.3.13., 단, 제42조의9~16('25.2.25.), 제42조의2제3호 및 제42조의4제1항제3호('26.6.1.))
3	개인정보 전송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이하 '전문기관 지정 고시') (시행일 : '25.3.5., 단, 제3조~4조('25.3.13.))
4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이하 '보건의료 고시') (시행일 : '25.3.13.)
5	통신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이하 '통신 고시') (시행일 : '25.3.13.)

5 마이데이터 체계 및 용어



■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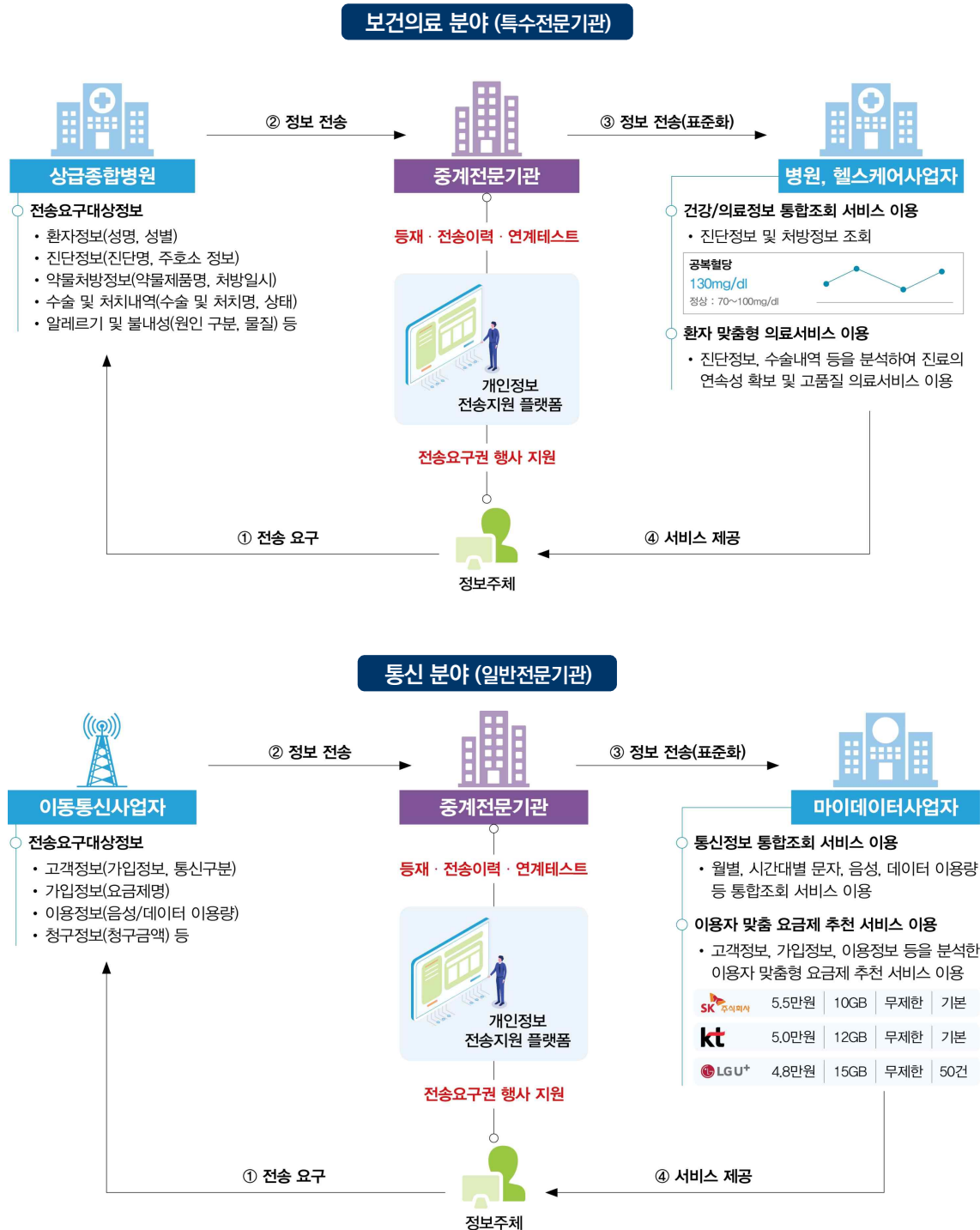
구분	용어 설명
본인전송요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본인의 개인정보를 자신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정보주체에게 정보처리장치로 처리 가능한 형태로 전송하는 것을 말함(보호법 제35조의2제1항)
제3자전송요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일반수신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표준화된 형태의 API 방식 활용, 중계전문기관을 통해 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말함(보호법 제35조의2제2항)

■ 주요 용어

구분	용어 설명
정보주체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개인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로, 기업·기관의 플랫폼·앱(APP)을 통해 자신의

구분	용어 설명
	개인정보에 대해 전송요구권을 행사하는 주체를 말함(보호법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2조제3호)
정보전송자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또는 제3자(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일반수신자)에게 전송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말함(보호법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
정보수신자	제3자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받는 자로, ①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일반·특수전문기관)과 ②일반수신자를 말함(보호법 제35조의2제2항)
일반수신자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자를 말함(보호법 제35조의2제2항제2호)
일반·특수 전문기관	통합조회, 맞춤형 서비스, 연구, 교육 등을 위하여 정보전송자로부터 전송받은 개인정보를 관리·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함(보호법 제35조의3)
중계전문기관	개인정보 전송 중계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고 관련 시스템을 운영하는 업무 및 정보전송자의 전송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함(보호법 제35조3제1항제1호, 2호)
개인정보 전송지원 플랫폼	전송이력 확인·전송 관리 등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전 이행 과정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온라인 채널을 말함(보호법 제35조의4)

6 마이데이터 서비스 예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호법 제35조의2)**

II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호법 제35조의2)

1 정보전송자 기준 및 의무

- 정보전송자는 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 행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또는 제3자(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일반수신자)에게 전송하는 자를 말한다.
- 정보전송자는 시간, 비용, 기술을 고려하여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전송요구대상정보를 정보처리 장치를 통해 처리 가능한 형태로 지체 없이 전송해야 한다.

1 법령

보호법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정보를 자신에게로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 정보주체는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개인정보 처리 능력,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 대상인 개인정보를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 2. (생 략)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시간, 비용,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 가능한 형태로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전송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2. 「지방세기본법」 제86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규정

시행령

제42조의2(정보전송자 기준) 법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정보전송자”라 한다)를 말한다.

1. 보건의료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보건의료정보전송자”라 한다)
 - 가. 질병관리청
 -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다.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 라. 그 밖에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중 개인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기술적·재정적 능력과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정보주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자
2. 통신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통신정보전송자”라 한다)
 - 가. 「전파법」 제10조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받아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정보주체와 이동통신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
 - 나.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개인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기술적·재정적 능력과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정보주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자
3. 에너지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에너지정보전송자”라 한다)
 -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개인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기술적·재정적 능력과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정보주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자
 -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 2) 그 밖의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도시가스사업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제42조의6(개인정보 전송의 기한 및 방법 등) ① 법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송 요구를 받은 정보전송자는 정보시스템 장애 등으로 전송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전송자는 지체 없이 전송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전송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② 정보전송자는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을 유지해야 한다.

제42조의7(전송 요구 시 적용이 배제되는 법률의 규정) 법 제35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3. 법 제17조 및 제18조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5
5.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제4항
6. 「외국환거래법」 제21조
7. 「의료법」 제21조제2항
8. 「약사법」 제30조제3항
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5조제2항
1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12.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2 주요내용 해설

가. 정보전송자 기준

- ‘정보전송자’란, 보호법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전송 요구받은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하는 자를 의미한다.
- 보호법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은 국민의 권리 보장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개인정보 처리 능력, 산업별 특성 등을 갖춘 자를 정보전송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본인전송요구와 제3자전송요구별로 그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다. 이는 본인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의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는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권에 준하여 폭넓게 보장하기 위함이다.
 - 본인전송요구권을 규정한 보호법 제35조의2제1항은 정보전송자의 기준을 개인정보 처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 반면, 제3자전송요구권을 규정한 보호법 제35조의2제2항은 정보전송자의 기준을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규모, 개인정보 처리 능력,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 초기에 전송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전송 준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에서는 본인전송요구와 제3자전송요구의 정보전송자 기준을 동일하게 규정하였다(시행령 제42조의2).

나. 분야별 정보전송자 기준

- 2025년 3월 13일부터 국민 체감도, 민간의 데이터 수요, 국가적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보건의료, 통신,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시행되며, 구체적인 분야별 정보전송자는 다음과 같다.

① 보건의료정보전송자

- 보건의료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중 ①질병관리청, ②「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③「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④「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등이 보건의료정보전송자에 해당한다(시행령 제42조의2제1호 가목부터 다목).
- ※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에 의해 3년마다 지정되므로, 상급종합병원 해당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s://www.mohw.go.kr>)에서 확인 가능

- 그 밖에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중 개인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기술적·재정적 능력과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정보주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자는 보건의료정보전송자가 될 수 있다(시행령 제42조의2제1호라목).

② 통신정보전송자

- 통신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중 「전파법」 제10조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받아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정보주체와 이동통신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통신정보전송자에 해당한다(시행령 제42조의2제2호 가목).

* 현재 통신 분야 정보전송자에는 이동통신 3사가 해당

-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개인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기술적·재정적 능력과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정보주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통신정보전송자가 될 수 있다(시행령 제42조의2제2호 나목).

③ 에너지정보전송자

- 에너지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한국전력공사)가 에너지정보전송자에 해당한다(시행령 제42조의2제3호 가목).
- 또한,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도시가스사업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중에서 개인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기술적·재정적 능력과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정보주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에너지정보전송자가 될 수 있다(시행령 제42조의2제3호 나목).

다. 정보전송자의 의무

■ 정보전송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본인전송요구 및 제3자전송요구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 전송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을 고려하여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전송요구대상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처리 가능한 형태로 전송하여야 한다(보호법 제35조의2제3항).

- ‘시간, 비용,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란, 전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및 전송을 하기 위해 갖춰야 할 기술 수준 등 기술적·재정적 능력을 고려하여 정보전송자가 전송 가능한 수준을 의미한다.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란, 자동적으로 계산이나 자료처리를 행하는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뜻하는 것으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모두 포함하며, 네트워크 시스템에서의 단말장치를 포함한다.

- 한편, 정보전송자는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본인 여부 확인을 하는 경우로 한정)할 수 있다(시행령 제62조의2제3항). 따라서 정보전송자가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새롭게 수집하는 것은 제한된다.

■ 정보전송자가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 이행시 준수해야 할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개인정보의 지체 없는 전송

- 정보전송자는 전산시스템 장애 등으로 전송이 지연되거나 불가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해야 한다(시행령 제42조의6제1항 전단).
 - '지체 없이'란, 몇 시간 또는 며칠과 같이 물리적인 시간 또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전송자에게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이에 따른 지체는 허용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 이에 천재지변, 불가항력적 사태 등으로 인한 전산시스템 장애로 개인정보의 전송이 지연되거나 불가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개인정보를 전송하여야 한다(시행령 제42조의6제1항 후단).
- 또한, 정보전송자는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등의 법령에서 타인에게 정보 제공 등을 금지하고 있더라도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전송할 의무를 가진다(보호법 제35조의2제4항).
 -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과 유사한 규정으로서 본인 외에 타인에게 제공을 금지하거나, 정보주체의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시행령에서 정하는 아래 법령의 규정에 대해서도 전송 요구시 적용이 배제된다(시행령 제42조의7).

〈 전송 요구 시 적용이 배제되는 법률의 규정 (보호법 제35조의2제4항, 시행령 제42조의7) 〉

- | | |
|--|--------------------------------------|
|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 • 「외국환거래법」 제21조 |
| • 「지방세기본법」 제86조 | • 「의료법」 제21조제2항 |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 • 「약사법」 제30조제3항 |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 |
| •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5조제2항 |
|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5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제4항 |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

②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 유지

- 정보전송자는 정보의 품질 보장 등을 위해 정보주체가 요구한 개인정보를 전송할 때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42조의6제2항).

※ 자세한 사항은 '2. 개인정보의 전송요구권 - ⑤ 전송 방법 및 절차 등(44쪽 이하)' 참고

③ 전송요구대상정보 전송 내역 보관

- 정보전송자는 전송요구대상정보의 전송 내역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는 개인정보 전송 업무의 신뢰성 확보 및 전송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전송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시행령 제42조의6제9항 본문).

- 다만, 중계전문기관을 통해 전송하는 정보전송자는 중계전문기관이 대신하여 개인정보 전송 내역을 보관할 수 있다(시행령 제42조의6제9항 단서).

※ 자세한 사항은 '2. 개인정보의 전송요구권 - ⑤ 전송 방법 및 절차 등(44쪽 이하)' 참고

④ 본인전송요구 방법 및 현황 게재

- 본인전송요구에 대하여 정보전송자는 정보주체가 보호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하고 전송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본인전송요구 방법, 전송 현황 및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시행령 제42조의6제5항).

※ 자세한 사항은 '2. 개인정보의 전송요구권 - ④ 전송 요구의 방법 및 절차(39쪽 이하)' 참고

3 질의 응답

Q1 | 개인정보 열람권과 본인전송요구권 간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답변 : 보호법 제35조의 '개인정보 열람권'이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처리현황 등에 대한 확인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면, 보호법 제35조의2제1항의 '본인전송요구권'은 열람권에서 더 나아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 가능한 형태'로 개인정보를 전송받아 정보주체가 원하는 시기·방식으로 활용하는 등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다 강화한 권리임

Q2 | 제3자 제공과 제3자전송요구권 간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답변 : 보호법 제17조의 '제3자 제공'은 개인정보를 보유한 개인정보처리자인 기업·기관이 중심이 되어 개인정보처리자의 필요에 따라 제공받는 자,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 등을 정하고 정보주체는 동의 여부만을 결정할 수 있는 반면, 보호법 제35조의2제2항의 '제3자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가 중심이 되어 자신이 원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전송 및 활용하는 제도로서 정보주체가 보다 적극적·중심적으로 자신의 정보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함

Q3 | 보호법상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조항이 해외사업자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답변 : 보호법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사업자에게도 보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도록 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관련 규정도 해외사업자에게 원칙적으로 적용됨

Q4 | 분야별 정보전송자 현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답변 : 영 제42조의16제1항에 따라 정보전송자를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에 등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정보전송자 현황은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온마이데이터, onmydat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2 일반수신자 기준 및 의무 등

- 일반수신자는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 정보를 전송받는 자를 말한다.
- 일반수신자는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고, 시행령과 고시에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전송받은 정보의 분리 보관, 전송 내역 보관 등 법령에서 정한 정보수신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법령

보호법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② 정보주체는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개인정보 처리 능력,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 대상인 개인정보를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2.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

시행령

제42조의3(일반수신자 기준) ① 법 제35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및 기술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표준 전송 절차, 전송시스템 연계 및 전송 보안 기준 등을 충족하는 전송 요구 관련 시스템
2. 전송 이력의 기록·보관 및 전송받은 개인정보의 분리 보관을 위한 시스템
3.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탐지 및 차단 시스템
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및 접근 통제 시스템

②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고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을 갖춘 자(이하 “일반수신자”라 한다)는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이하 “제3자전송요구”라 한다)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제42조의9제1항제1호에 따른 중계전문기관(이하 “중계전문기관”이라 한다)에 통지하고 법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이하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이라 한다)에 등재해야 한다.

제42조의6(개인정보 전송의 기한 및 방법 등) ⑥ 일반수신자는 제3자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전송 처리 체계를 저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송 요구 목적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2.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필수적인 경우가 아닌데도 전송받은 정보에 대한 제3자 제공 동의를 전송 요구와 동시에 받는 행위
3. 법 제35조제2제1항·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 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권리에 대한 대리 행사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4. 법 제35조제3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지 않고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5.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42조의5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 내용을 변경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6.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특정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7.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를 이유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전산설비에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여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행위로서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전송 처리 체계를 저해하는 행위

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3조(일반수신자 시설 및 기술) 영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및 기술”은 별표 1과 같다.

2 주요내용 해설

가. 일반수신자 개념 및 역할

■ ‘일반수신자’란, 고유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의 진위 여부 등 확인 목적으로 정보를 전송받는 자를 말한다(보호법 제35조의2제2항제2호, 시행령 제42조의3제1항).

- ‘고유의 업무’란, 기업 또는 기관 등이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기존에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근거가 된 기본적인 업무를 의미한다. 즉, 전송 요구를 통하여 전송받은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때, 그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 또는 원인이 되는 업무를 말한다.
- ‘진위 여부 등 확인 목적’이란, 일반수신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수집한 정보가 사실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류 등을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제공받지 않고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에 따라 정보전송자로부터 전송받아 단순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 일반수신자는 전송받은 정보를 고유의 업무를 위한 단순 확인하는 목적 외로는 처리할 수 없고, 확인 후 목적이 달성되면 전송받은 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사례 일반수신자가 단순 확인 목적으로 정보를 전송받는 사례

- 박물관, 놀이동산 등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할인 대상여부 확인을 위해 정보전송자로부터 요건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전송받는 경우
 - 직원을 채용하려는 회사가 ① 지원자가 제출한 자격증 진위여부 확인을 위하여 해당 자격증 운영기관으로부터 지원자의 어학점수, 기사/기술사 자격증 등 자격정보를 전송받는 경우, 또는 ② 지원자가 졸업한 대학/대학원으로부터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전송받는 경우
- ※ 향후 교육분야 확대시 적용 사례

나. 일반수신자 기준 등

■ 일반수신자는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고, 시행령 제42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 및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보호법 제35조의2제2항제2호, 시행령 제42조의3제1항 1호부터 4호, 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3조, 별표 1).

-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하여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의미한다(보호법 제29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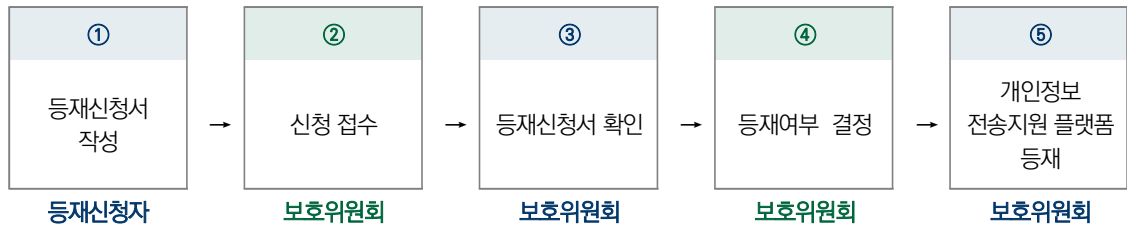
- 일반수신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술과 관련하여 시행령 제42조의3제1항에서는 ①표준 전송 절차, 전송시스템 연계 및 전송 보안 기준 등을 충족하는 전송 요구 관련 제반 시스템, ②전송 이력의 기록·보관 및 전송받은 개인정보의 분리 보관을 위한 시스템, ③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탐지 및 차단 시스템, ④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및 접근 통제 시스템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시행령 제42조의3제1항).
- 일반수신자가 갖추어야 하는 세부 시설 및 기술은 전송 요구 관련 제반 시스템과 보호체제로 구분된다(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3조, 별표 1).

〈 일반수신자 시설 및 기술 (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3조, 별표 1) 〉

구분	시설 및 기술
전송 요구 관련 제반 시스템	1) 전송 관리 및 연계, 전송 이력 관리 기능 - 전송요구서 관리 및 정보주체 인증 기능 - 중계전문기관과의 연계 기능 -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과의 연계 기능 - 개인정보 전송 이력의 기록·보관 기능 - 전송받은 정보의 분리·보관 기능 - 전송 내역의 중계전문기관을 통한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 제출 기능 2)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 및 보안시스템 구축 - 전송 요구 관련 시스템의 네트워크 구축 - 전송 요구 관련 시스템에 대한 침입탐지·차단 시스템 구축
보호체계	1) 일반수신자 업무 관련 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 ※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안 포함 2) 개인정보 전송 이력의 기록·보관 및 점검 방안 3) 전송 요구 관련 시스템의 주요 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접근 권한의 관리 및 점검 체계 4)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전송 요구 관련 시스템, 업무용 단말 등에 대한 접근통제 체계 - 전송 요구 관련 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의 제한 등 접근통제 조치 - 전송 요구 관련 시스템에 대한 외부 접속시 안전한 인증수단 등의 적용

- 보호위원회는 제3자전송요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수신자가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온마이데이터, onmydata.go.kr)에 등재하게 해야 한다(시행령 제42조의16제1항).
- 일반수신자로서 정보를 전송받으려는 자는 ①일반수신자 등재신청서(전문기관 지정 고시 별지 제5호 서식), ②개인정보 관리 계획서, ③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일반수신자 시설 및 기술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3조, 별표 1)를 첨부하여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에 등재를 신청하여야 한다(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15조제1항).
- ※ 일반수신자 시설·기술 기준 및 등재 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일반수신자 등재안내서」 참고

〈 일반수신자의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 등재 절차 〉



- 일반수신자는 개인정보 전송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중계전문기관에 통지하고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에 등재해야 한다(시행령 제42조의3제2항).

다. 일반수신자의 의무 등

- 일반수신자가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를 이행하고, 전송받은 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준수해야 할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안전성 및 신뢰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정보 수신

- 일반수신자는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방식으로 정보를 전송받을 수 있도록 ①정보 전송 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전송하는 방식, ②정보전송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하는 방식, ③상호 식별·인증할 수 있는 방식, ④상호 확인할 수 있는 방식 등으로 전송요구대상정보를 전송받아야 한다(시행령 제42조의6제3항).
- 이러한 방식 외에 정보주체의 접근수단(정보주체의 전자서명생성정보, 인증서, 식별자, 인증정보, 생체 정보)을 직접 보관하거나, 접근권한을 확보하거나, 접근수단에 대한 지배권 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사용 및 보관하여 보건의료전송정보, 통신전송정보 및 에너지전송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시행령 제42조의6제7항).

※ 자세한 사항은 '2. 개인정보의 전송요구권 - ⑤ 전송 방법 및 절차 등(44쪽 이하)' 참고

- 이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전송요구대상정보만 선택하여 전송 요구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② 전송받은 정보의 분리 보관

- 일반수신자는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는 목적이 달성되면 전송받은 정보를 파기해야 하며 목적 달성 전까지는 다른 정보와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42조의6제8항).

※ 자세한 사항은 '2. 개인정보의 전송요구권 - ⑤ 전송 방법 및 절차 등(44쪽 이하)' 참고

③ 전송 내역의 보관

- 일반수신자는 정보주체가 자신이 행사한 개인정보 전송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전송 내역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42조의6제9항).

※ 자세한 사항은 '2. 개인정보의 전송요구권 - ⑤ 전송 방법 및 절차 등(44쪽 이하)' 참고

■ 일반수신자는 제3자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경우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전송 처리 체계를 저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시행령 제42조의6제6항 제1호부터 제8호).

① 전송 요구 목적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행위(제1호)

- 정보주체는 일반수신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진위 여부 확인 등으로만 전송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 전송 요구 목적과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를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 일반수신자는 개인정보를 전송받아 확인하는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정보주체가 선택하는 전송 요구 목적으로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주의가 필요한 사례

- 맞춤형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거나 맞춤형 서비스 출시를 위해 관련 정보를 축적하려는 목적으로 정보주체에게 당초 일반수신자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목적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전송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②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경우가 아님에도 전송받은 정보에 대한 제3자 제공 동의를 전송 요구와 동시에 받는 행위(제2호)

-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필수적이지 않은 제3자 제공 동의를 전송 요구와 동시에 받아 정보주체가 불필요한 동의를 하게 해서는 안 되며, 서비스 운영에 필수적이지 않은 제3자 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도 하여서는 안 된다.

③ 법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 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권리에 대한 대리행사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제3호)

- 일반수신자가 정보주체에게 전송 요구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해 전송 요구를 하도록 정보주체의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는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전송요구권 행사라는 마이데이터 제도 취지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제한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① 정보주체는 제35조에 따른 열람, 제35조의2에 따른 전송, 제36조에 따른 정정·삭제,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제37조의2에 따른 거부·설명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

주의가 필요한 사례

- 일반수신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허위, 과장하는 메시지 노출을 통해 정보주체가 전송할 의사가 없는 개인정보를 전송 요구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④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지 않고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제4호)

- 일반수신자는 고유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의 진위 여부 등 단순 확인 목적으로 정보를 전송 받는 자를 의미하므로, 일반수신자가 단순 확인하는 목적을 벗어나 개인정보를 분석하여 맞춤형 서비스, 연구·교육 등의 목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주의가 필요한 사례

- 입사 지원 시 제출한 공인 시험 종류 및 성적 확인을 목적으로 전송한 정보를 활용하여 지원자의 수준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추천하는 경우

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전송 요구 내용을 변경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제5호)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전송 요구 내용을 변경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된다.

⑥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특정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제6호)

- 전송받은 정보를 통해 진위 여부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보수신자의 이익과 정보주체 또는 정보주체 자신 외 다른 정보주체의 이익이 서로 상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수신자가 특정한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등 보호하지 않는 행위는 전송 체계 확립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금지된다.

⑦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를 이유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전산설비에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여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7호)

-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를 이유로 장애가 발생할 정도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전산설비에 접근할 경우 시스템 과부하로 인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다른 이용자의 정당한 서비스 이용이 방해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금지된다.

⑧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행위로서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전송 처리 체계를 저해하는 행위(제8호)

- 시행령 제42조의6제6항제1호부터 제7호에서 언급된 행위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행위를 모두 포괄하여 제한한다는 것으로, 일반수신자는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행위 외에도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마이데이터 제도의 전송 처리 체계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질의 응답

Q1 | 일반수신자(예: 통신사업자)는 고유 업무 분야(예: 통신업)의 정보만을 전송받을 수 있는 것인지?

답변 : 일반수신자가 전송받는 정보의 종류는 전송받는 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 범위 내에 있으면 충분하고, 고유 업무 분야의 정보만을 전송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

※ (예시) 통신사업을 하는 일반수신자가 통신요금 할인을 위해서 이용자에 대한 교육 분야의 정보(학생 재학 여부)도 전송받을 수 있으며, 고유 업무 분야인 통신 분야의 정보만 수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님

Q2 | 일반수신자는 전송받은 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답변 : 일반수신자는 시행령 제42조의3 및 전문기관 지정 고시에 따라 특정 업무 처리나 본인 증명에 필요한 전자적 형태의 서류 및 정보를 정보주체로부터 제출받지 않고 직접 정보 전송자로부터 전송받아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 '단순 확인 목적'으로만 전송받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

일반수신자가 단순 확인 목적으로 전송받은 정보를 처리하고 나면 전송받은 정보의 처리 목적은 달성한 것으로,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며 위반 시 보호법 제75조제2항제4호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Q3 | 동일한 기관이 일반수신자 등재와 일반전문기관·특수전문기관 지정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답변 : 동일한 기관이 일반수신자 등재와 일반전문기관·특수전문기관 지정을 동시에 받는 것은 가능함

다만, 이 경우 해당 기관은 일반수신자의 시설 및 기술, 일반전문기관 및 특수전문기관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각각 등재 및 지정신청을 하여야 함

3 전송요구대상정보

- 전송요구대상정보는 정보주체가 전송요구권을 통해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이다. 전송요구대상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계약 체결 및 이행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에서 기본적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 본인전송요구 및 제3자전송요구에 따라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는 동일하며, 보건의료, 통신, 에너지 등 분야별로 구체화하여 규정하였다.

1 법령

보호법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정보를 자신에게로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일 것
 - 가. 제15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아 처리되는 개인정보
 - 나.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
 - 다.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제23조제1항제2호 또는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처리되는 개인정보 중 정보주체의 이익이나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전송 요구의 대상으로 지정한 개인정보
2.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기초로 분석·가공하여 별도로 생성한 정보가 아닐 것
3.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일 것

② 정보주체는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개인정보 처리 능력,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 대상인 개인정보를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2.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

③ ~ ⑦ (생략)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송 요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전송 요구의 방법, 전송의 기한 및 방법, 전송 요구 철회의 방법, 전송 요구의 거절 및 전송 중단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42조의4(전송 요구 대상 정보의 범위) 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전송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인정보를 자신,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라 한다) 또는 일반수신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보건의료정보전송자: 다음 각 목의 보건의료 관련 정보 중 정보주체의 이익, 전송에 필요한 시간·비용 및 기술적으로 전송 가능한 합리적인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정보(이하 “보건의료전송정보”라 한다)로서 해당 보건의료정보전송자가 보유하는 정보
 - 가. 「의료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 등 진료와 관련하여 생성된 정보
 - 나. 「약사법」 제30조에 따른 조제기록 등 조제와 관련하여 생성된 정보
 - 다.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를 통하여 생성·수집된 정보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유사한 보건의료 관련 정보
 2. 통신정보전송자: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함에 따라 생성된 이용자의 가입정보, 이용정보, 이용요금의 청구정보 및 납부정보 등의 정보 중 정보주체의 이익, 전송에 필요한 시간·비용 및 기술적으로 전송 가능한 합리적인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이하 “통신전송정보”라 한다)로서 해당 통신정보전송자가 보유하는 정보
 3. 에너지정보전송자: 다음 각 목의 에너지 관련 정보 중 정보주체의 이익, 전송에 필요한 시간·비용 및 기술적으로 전송 가능한 합리적인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이하 “에너지전송정보”라 한다)로서 해당 에너지정보전송자가 보유하는 정보
 - 가. 「전기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전기 공급에 따라 생성된 에너지 사용량 정보, 전기요금의 청구정보 및 납부정보 등의 정보
 - 나.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에 따라 생성된 에너지 사용량 정보, 도시가스 요금의 청구정보 및 납부정보 등의 정보
 -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에너지 관련 정보
- ② 정보주체는 제1항에 따른 정보 외에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전송자가 보유하는 정보로서 시간, 비용, 기술 등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에게 전송할 수 있다고 해당 정보전송자가 자율적으로 정한 정보(이하 “자율전송정보”라 한다)를 자신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정보전송자에 대하여 보건의료전송정보, 통신전송정보 및 에너지전송정보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일반수신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송받는 자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는 전송을 요구할 수 없다.
- ④ 보호위원회(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보호위원회와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는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등이 보유하는 본인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고시하기 전에 전송 요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 및 전송방법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2 주요내용 해설

가. 전송요구대상정보 기본 요건

■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는 보호법 제35조의2에서 정보주체가 정보전송자에게 자신 또는 제3자(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일반수신자)에게 전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정보여야 하며, 세부적인 기준 및 항목은 시행령과 분야별 고시에서 규정하였다.

① 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는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로서 아래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포함),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거나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처리되는 개인정보(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포함) 중 정보주체의 이익이나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전송 요구의 대상으로 지정한 개인정보

②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기초로 분석·가공하여 별도로 생성한 정보가 아닐 것

- 개인정보 수집·생성 등에 있어 개인정보처리자 내지 제3자의 노력 등이 투입된 정보에 대하여 전송요구권을 인정할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분석·가공하여 별도로 생성한 정보(예를 들어 통계정보, 분석값, 모델 등)를 제외하였다.

별도로 생성한 정보 사례

- 보건의료 분야 : 진단·처방내역 등을 분석 후 별도로 생성한 위험군 등 분류정보, 식이요법 추천정보 등 진료행위와 별개로 생성한 정보
- 통신 분야 : 통화 패턴과 데이터 사용량을 분석해 도출한 ‘개인 맞춤형 요금제 추천’ 정보를 생성한 경우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통신사의 알고리즘과 데이터 분석 기술이 적용된 부가가치 정보이므로 별도 생성 정보에 해당

〈(안건) 의료 마이데이터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에 관한 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23.11.22)〉

- 보호법상 전송대상에서 제외되는 '별도로 생성한 정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본질적 행위와 '별도'로 생성한 정보를 의미한다는 것이 입법 취지임
- 의료인 등이 의료행위를 이행하기 위해 의료법에 따라 필수적으로 기록하는 진료기록부의 기재사항은 진료 과정에서 생성되는 진료행위의 결과물에 해당하므로 본질적 의료행위와 '별도로' 생성한 정보가 아님
- 의료진이 환자의 치료와 별개로 진단·처방내역 등을 분석한 후 위험군 등 분류정보·통계정보를 별도로 생성하거나, 환자 병력 등을 프로파일링하여 진료 목적 외에 운동·식이요법 정보를 생성하는 등의 행위가 '별도로 생성한 정보'에 해당함
- 따라서 진료기록은 진료행위 과정에서 생성하는 정보이며, 개인정보처리자가 '별도로 생성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송요구대상정보에 해당함

③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일 것

- 전송요구대상정보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 데이터의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되는 개인정보로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수기 등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전송 요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종이문서 등 디지털 전환에 추가적인 노력, 비용 등이 과도하게 소요될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전송 가능한 형식으로 변환하는데 어려움이 큼

나. 분야별 전송요구대상정보

■ 보건의료, 통신, 에너지 분야별 전송요구대상정보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규정하였으며(시행령 제42조의4제1항), 각 분야별 고시에서는 전송요구대상정보의 정보항목, 세부항목, 전송 요구 시점부터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보건의료 고시, 통신 고시).

- 분야별 전송요구대상정보에 대해 전송 요구 시점부터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은 정보의 생성주기, 빈도 및 정보 보유규모, 정보전송자 부담 등을 고려하여 시간적 범위를 달리 규정하였다. 추후 전송 인프라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보의 구체적 항목 및 기한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① 보건의료전송정보

- 보건의료정보전송자가 전송하는 정보는 ㉠「의료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 진료와 관련하여 생성된 정보, ㉡「약사법」 제30조에 따른 조제기록 등 조제와 관련하여 생성된 정보,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를 통하여 생성·수집된 정보, ㉣ 그 밖에 유사한 보건의료 관련 정보 중 정보주체의 이익, 전송에 필요한 시간·비용 및 기술적으로 전송 가능한 합리적인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정보로서 해당 보건의료정보전송자가 보유하는 정보를 말한다(시행령 제42조의4제1항제1호, 보건의료 고시 제2조, 별표).

※ 보건의료전송정보는 보호법 제23조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정보주체의 이익이나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전송 요구의 대상으로 지정한 개인정보에 해당(보호법 제35조의2제1항제1호다목)

※ 보건의료전송정보의 활용의 경우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등을 고려하여야 함

〈 보건의료정보 관련 법령 〉

• 의료법 제22조 및 제23조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23조(전자의무기록) 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이하 “전자의무기록”이라 한다)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 약사법 제30조

제30조(조제기록부) ① 약사는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각 호에 따라 처방전 없이 조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면 환자의 인적 사항, 조제 연월일, 처방 약품명과 일수, 조제 내용 및 복약지도 내용,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제기록부(전자문서로 작성한 것을 포함한다)에 적어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의료기기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품 외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義肢)·보조기(補助器)는 제외한다.

1.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2. 상해(傷害)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3.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4.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상세한 의료 분야 정보항목 및 세부항목은 다음과 같다(보건의료 고시 제2조, 별표).

〈 보건의료 분야 전송요구대상정보 (보건의료 고시 제2조, 별표) 〉

정보전송자	정보항목	세부항목	대상 범위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정보	접종자 현황(성명, 성별, 생년월일), 접종일자, 접종기관명, 접종차수, 예방접종명	전체기간
국민건강 보험공단	건강검진정보	건강검진정보, 영유아건강검진정보, 암건강검진정보	전송 요구 시점으로부터 10년
	진료내용정보	대상자 현황, 병의원/약국 명칭, 진료개시일, 진료형태, 방문입원일수, 처방횟수, 본인부담금, 병의원 소재지	전송 요구 시점으로부터 1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투약이력정보	조제일자,약품코드,약품명(제품명), 성분코드, 함량, 투약량, 투여횟수, 총투약일수	전송 요구 시점으로부터 1년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환자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전송 요구 시점으로부터 3년
	내원정보	내원 상태, 진료 구분, 내원 기간	
	진단정보	진단 임상적 상태, 진단명, 진단 및 주호소 정보, 진단 일자	
	약물처방 정보	약물 처방 상태, 약물 처방 의도, 지참약 여부, 약품 제품명, 약물 처방 일시, 약물 투여 방법	
	수술 및 처치내역	수술 및 처치 상태, 수술 및 처치명, 수술 및 처치 일자	
	진단검사, 기타검사	진단검사 상태, 검사구분(진단, 기타), 검사 항목명, 검사 일시, 검사 결과, 참고구간	
	알레르기 및 불내성	알레르기 및 불내성 원인 구분, 알레르기 및 불내성 원인 물질, 알레르기 및 불내성 기록 일시, 알레르기 및 불내성 반응, 추가정보	
	영상검사, 병리검사	검사 상태, 검사구분(영상, 병리), 검사명, 검사 의뢰일, 검사 결과	

※ 각 정보의 식별자는 기본 포함한다.

※ 의료기관에 따라 해당 의료정보가 시스템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

② 통신전송정보

- 통신정보전송자가 전송하는 정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함에 따라 생성된 이용자의 가입정보, 이용정보, 이용요금의 청구정보 및 납부정보 등의 정보 중 정보주체의 이익, 전송에 필요한 시간·비용 및 기술적으로 전송 가능한 합리적인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로서 해당 통신정보전송자가 보유하는 정보를 말한다(시행령 제42조의4제1항제2호, 통신 고시 제2조, 별표).

〈 통신전송정보 관련 법령 〉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기간통신업무”란 전화·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업무 및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업무를 말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통신서비스(제6호의 전기통신업무의 세부적인 개별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

- 상세한 통신 분야 정보항목 및 세부항목은 다음과 같다(통신 고시 제2조, 별표).

〈 통신 분야 전송요구대상정보 (통신 고시 제2조, 별표) 〉

정보항목	세부항목	대상 범위
고객정보	계약관리번호, 가입번호, 통신구분, 가입구분	전송 요구 시점
가입정보	서비스요금제명	전송 요구 시점
이용정보	서비스이용연월, 서비스음성이용량, 서비스문자이용량, 서비스데이터이용량	전송 요구 시점으로부터 1년
청구정보	청구연월, 청구금액, 납부예정일자	전송 요구 시점으로부터 1년
납부정보	납부연월, 납부금액, 납부수단	전송 요구 시점으로부터 1년

※ 영 제42조의4제3항에 따라 위 정보항목 중 청구정보 및 납부정보는 일반전문기관으로만 전송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에너지전송정보

- 에너지정보전송자가 전송하는 정보는 ㉠「전기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전기 공급에 따라 생성된 에너지 사용량 정보, 전기요금의 청구정보 및 납부정보 등의 정보,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에 따라 생성된 에너지 사용량 정보, 도시가스 요금의 청구정보 및 납부정보 등의 정보, ㉢ 그 밖에 유사한 에너지 관련 정보 중 정보주체의 이익, 전송에 필요한 시간·비용 및 기술적으로 전송 가능한 합리적인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로서 해당 에너지정보전송자가 보유하는 정보를 말한다(시행령 제42조의4제1항제3호).
- 에너지 분야의 전송 요구는 '26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에너지 분야 정보항목 및 세부항목을 정하는 에너지 분야 고시는 추후 제정될 예정이다.

〈 에너지전송정보 관련 법령 〉

• 전기사업법 제14조

제14조(전기공급의 의무)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통합발전소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

제19조(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 ① 가스도매사업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에 별도로 정한 사유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대량수요자에게 공급하기로 한 천연가스와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가 제8조의4를 위반하여 천연가스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에 대하여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이하 생략)

다. 자율전송정보

■ 한편, 정보주체는 정보전송자가 보유하는 정보로서 시간, 비용, 기술 등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에게 전송할 수 있다고 해당 정보전송자가 자율적으로 정한 정보를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시행령 제42조의4제2항).

- 정보전송자는 보건의료전송정보, 통신전송정보, 에너지전송정보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정보주체에게 전송하기로 자율적으로 정한 자율전송정보를 누리집,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 본인전송요구 방법과 함께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전송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

라. 전송정보의 예외 사항

■ 보호위원회는 통신 분야 전송요구대상정보 중 ‘청구정보 및 납부정보’의 경우, 일반전문기관으로만 전송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금융 분야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으로 허가받은 자만이 해당 정보를 전송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양 법률 간 정합성을 고려하여 보호법에 따라 지정받은 일반전문기관으로만 전송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시행령 제42조의4제3항).

※ 시행령 제42조의4 ③ 정보주체는 보호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정보전송자에 대하여 보건의료전송정보, 통신전송정보 및 에너지전송정보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일반수신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송받는 자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는 전송을 요구할 수 없다.

■ 또한, 보건의료정보전송자는 보건의료전송정보에 대해서는 중계전문기관을 통하여 특수전문기관에게만 전송해야 한다(시행령 제42조의6제4항).

3 질의 응답

Q1 | 특정 분야 정보전송자가 다른 분야 전송요구대상정보를 보유하는 경우(예를 들어 통신정보전송자가 에너지 분야 전송요구대상정보를 보유한 경우), 다른 분야 정보도 전송 대상에 포함되는지?

답변 : 시행령 제42조의4 및 관련 고시에서 특정 분야의 정보전송자가 전송하여야 하는 전송요구대상정보는 특정되어 있으며, 특정 분야의 정보전송자가 다른 분야의 전송요구대상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분야의 정보전송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전송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님

※ (예시) 통신정보전송자인 A통신사가 본업의 사업을 위해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에너지 사용량 정보가 에너지전송정보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A통신사가 에너지 분야 정보전송자가 아닌 한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전송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님

Q2 | 전송받은 정보도 전송 요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포함되는지?

답변 : 정보수신자가 전송받은 정보는 보호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송요구대상정보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에 따른 전송 대상에서 제외됨

Q3 | 의료법 제21조제2항에서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지?

답변 : 보호법 제35조의2제4항은 개인정보 전송시 다른 법률의 관련 규정에서 제한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보호법 제35조의2제4항은 전송 요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등의 법령에 의해 타인への 제공 등이 금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전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의료법 제21조제2항은 보호법 제35조의2제4항제3호에 따라 국세기본법 등과 유사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여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전송하도록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7제7호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보건의료정보에 대해서도 전송 가능함

Q4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를 동시에 하는 경우, 금융 분야와 전 분야의 전송요구대상정보 중 중복되는 항목을 모두 전송받아야 하는지?

답변 : 신용정보법 제33조의2의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과 보호법의 제35조의2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적용 법률이 상이하므로, 개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전송받아야 하고, 전송받은 정보는 각각의 업무 목적에 맞게 활용되어야 함

4 전송 요구의 방법 및 절차

- 정보주체는 보호법령에서 정한 전송 요구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전송 요구 목적,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 정보 등을 특정하여 전송을 요구하여야 한다. 본인전송요구는 정보전송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하고, 제3자전송요구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일반수신자를 통해 요구할 수 있다.
- 정보주체는 전송 요구의 권리 행사를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다.

1 법령

보호법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송 요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전송 요구의 방법, 전송의 기한 및 방법, 전송 요구 철회의 방법, 전송 요구의 거절 및 전송 중단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42조의5(전송 요구의 방법 등) 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이하 “본인전송 요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전송 요구 목적 및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를 특정해야 한다.

② 정보주체는 제3자전송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정해야 한다.

1. 전송 요구 목적
2. 전송 요구를 받는 자
3.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자
4.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5. 정기적 전송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제4항에 따라 정보전송자에게 제42조의9 제1항제2호에 따른 일반전문기관(이하 “일반전문기관”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특수전문기관(이하 “특수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제3자전송요구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전송 요구의 종료시점
7.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③ 정보주체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일반수신자를 통하여 정보전송자에게 제3자전송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일반수신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그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제3자전송요구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정보주체는 정보전송자에게 일반전문기관 및 특수전문기관에 대한 제3자전송요구를 하는 경우 같은 내역의 개인정보를 정기적으로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4조(전송 요구의 방법)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송요구서를 작성하여 정보전송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주요내용 해설

가. 본인전송요구의 방법 및 절차

※ 자세한 절차는 '부록 -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 및 이행 절차 - 1. 본인전송요구 절차(134쪽 이하)' 참고

■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 보다 용이하게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전송자에게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자신에게로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보호법 제35조의2제1항).

- 정보전송자는 본인전송요구 방법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하며, 정보주체는 정보전송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 본인전송요구 방법을 확인하여 그 방법에 따라 본인전송요구를 할 수 있다(시행령 제42조의6제5항).

※ 정보주체가 용이하게 찾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정보전송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한 애플리케이션 등 - 다만, 보건의료정보전송자 및 에너지정보전송자의 경우에는 중계전문기관이 대신하여 본인전송요구의 방법을 게재할 수 있다(시행령 제42조의6제5항 단서).

■ 정보주체는 시행령 제42조의5제1항에 따라 본인 전송요구권을 행사하는 때에는 전송 요구 목적과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를 특정해야 한다(시행령 제42조의5제1항).

※ 본인전송요구의 경우 제3자전송요구와는 달리 별도 개인정보 전송요구서는 없으며, 정보전송자는 특정하여야 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개인정보를 전송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도록 함

나. 제3자전송요구의 방법 및 절차

※ 자세한 절차는 ‘부록 - ①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 및 이행 절차 - 2. 제3자전송요구 절차(142쪽 이하)’ 참고

■ 정보주체는 정보전송자에게 직접 전송을 요구하지 않고 정보수신자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일반수신자를 통하여 정보전송자에게 제3자전송요구를 할 수 있다(시행령 제42조의5제3항).

- 제3자전송요구의 경우 전송 요구 목적, 전송 요구를 받는자,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자,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등을 특정한 개인정보 전송요구서를 작성하여 정보수신자를 통하여 정보전송자에게 제출해야 한다(시행령 제42조의5제2항 및 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5조, 별지 2).
- 이 경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일반수신자는 개인정보 전송요구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해당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전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야 한다.

〈 개인정보 전송요구서 주요 내용 (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5조, 별지 2) 〉

- ① **전송 요구 목적**
 - 정보수신자가 전송받은 정보를 통해 제공하려는 구체적인 서비스, 목적 등
- ② **전송 요구를 받는 자**
 - 정보주체가 선택한 정보전송자의 상호 또는 명칭
- ③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자**
 - 정보수신자의 상호 또는 명칭
- ④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 정보주체가 선택한 전송 요구 정보항목
- ⑤ **정기적 전송 여부 및 주기***
 - 일회적인 전송 요구가 아닌 정기적으로 개인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정기적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 정기적 전송의 구체적 주기
 - * 시행령 제42조의5제4항에 따라 정보전송자에게 일반전문기관 및 특수전문기관에 대한 제3자전송요구를 하는 경우에 한정
- ⑥ **전송 요구의 종료시점**
 - 개인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는 기간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종료시점
- ⑦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전송받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정보주체는 제3자전송요구를 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반전문기관 및 특수전문기관에 대하여 같은 내역의 개인정보를 정기적으로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령 제42조의5제4항).

- **(정기적 전송)** 정보의 최신성 등을 유지하기 위해 정보주체가 정한 기간 단위로 정보를 반복적·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것
- **(비정기적 전송)** 정보주체가 요구할 때마다 정보를 비정기적으로 전송하는 것

- 정보주체가 정기적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주기를 특정하여야 하고, 정기적 전송은 일반전문기관 및 특수전문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시행령 제42조의5제2항제5호, 제42조의5제4항).
 - 정기적 전송 주기는 1주일 이상 1개월 이하의 주기를 선택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전송 요구하는 정보의 종류에 따라 지정권자가 그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정보주체가 정기적 전송을 요구한 내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 등을 통해 언제든지 정기적 전송 철회가 가능하다.
- 정기적 전송을 제공하는 기간은 정보주체가 원하는 기간 동안 정기적 전송이 가능하도록 하되, 1년 이상 미접속 시 정기적 전송을 자동으로 중단하여야 한다.
- 일반수신자는 수집한 정보의 진위 여부 등의 단순 확인 목적으로 필요시에만 정보를 전송받으므로, 정기적 전송을 받을 수 있는 자에서 제외된다.

■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은 전송 요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정보주체는 전송 요구의 권리 행사를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 이외의 자가 권한 없이 또는 권한을 넘어 정보주체의 권리를 대신하여 행사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수준의 본인확인 절차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정보전송자는 전송을 요구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대리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송을 거절할 수 있다.

3 질의 응답

Q1 | 정보주체는 본인전송요구권을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는지?

답변 : 보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대리인을 통해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전송요구의 대리 행사는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에 한정된 것이므로 정보주체 본인만이 접근·제어 가능한 단순 저장공간 등에 전송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함

* 정보주체는 보호법 제35조의2에 따른 전송 요구를 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음

다만, 대리인을 통한 전송 요구와 관련하여 시행령 제42조의8제1항제4호에서는 대리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크리덴셜 스테핑 또는 자동화된 봇을 통한 접근시도 등 정보주체 본인인지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송 요구를 제한할 수 있음

Q2 | ‘전송 요구의 종료시점’을 특정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 전송 요구의 종료시점을 특정하지 않는 경우, 전송요구권을 행사하는 정보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보수신자가 계속적으로 정보를 전송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정보주체의 의사가 명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전송 요구의 종료시점을 특정하도록 한 것임

Q3 | 정보주체가 마이데이터 서비스 미접속 시 정기적 전송을 중단해야 하는지?

답변 : 정보주체가 정기적 전송의 종료시점을 별도로 정하였거나, 전송 요구 의사를 철회하기 전까지 정보수신자가 제공하는 기간 중에서 선택하여 정기적 전송이 가능함

다만, 장기 미접속자 등의 정보가 불필요하게 지속적으로 전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1년 이상 미접속시 정기적 전송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함

5 전송 방법 및 절차 등

- 정보전송자는 정보주체가 요구하는 개인정보 전송시 암호화 등 안전성과 신뢰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해진 방식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송하고,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정보전송자는 제3자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중계전문기관을 통하여 전송해야 한다.

1 법령

보호법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송 요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전송 요구의 방법, 전송의 기한 및 방법, 전송 요구 철회의 방법, 전송 요구의 거절 및 전송 중단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42조의6(개인정보 전송의 기한 및 방법 등) ① 법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송 요구를 받은 정보전송자는 정보시스템 장애 등으로 전송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전송자는 지체 없이 전송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전송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② 정보전송자는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을 유지해야 한다.

③ 정보전송자는 전송의 안전성 및 신뢰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식(본인전송요구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한정한다)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1. 정보 전송 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전송하는 방식
2. 정보전송자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 간에 미리 협의하여 정하는 방식
3. 정보전송자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 간 상호 식별·인증할 수 있는 방식
4. 정보전송자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 간 상호 확인할 수 있는 방식

④ 정보전송자는 제3자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중계전문기관을 통하여 전송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전송자는 보건 의료전송정보에 대해서는 중계전문기관을 통하여 특수전문기관에만 전송해야 한다.

⑤ 정보전송자는 정보주체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하고 전송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본인전송요구 방법, 전송 현황 및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다만, 보건의료정보전송자 및 에너지정보전송자의 경우에는 중계전문기관이 대신하여 게재할 수 있다.

⑥ 일반수신자는 제3자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전송 처리 체계를 저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송 요구 목적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2.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필수적인 경우가 아닌데도 전송받은 정보에 대한 제3자 제공 동의를 전송 요구와 동시에 받는 행위
3. 법 제35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 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권리에 대한 대리 행사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4.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지 않고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5.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42조의5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 내용을 변경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6.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특정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7.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를 이유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전산설비에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여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행위로서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전송 처리 체계를 저해하는 행위

⑦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는 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접근수단을 제2호의 방식으로 사용·보관함으로써 보건의료전송정보, 통신전송정보 및 에너지전송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정보주체의 접근수단
 - 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
 - 나. 제3자전송요구를 위하여 정보전송자에 등록된 정보주체의 식별자 또는 인증정보
 - 다. 정보주체의 생체정보
2. 다음 각 목의 방법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이름으로 열람하는 방식
 - 가. 제1호의 접근수단을 직접 보관하는 방법
 - 나. 제1호의 접근수단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는 방법
 - 다. 제1호의 접근수단에 대한 지배권, 이용권 또는 접근권 등을 사실상 확보하는 방법

⑧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로서 처리하는 정보와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처리하는 정보를 분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다만, 특수전문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한정한다)이 같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으로 보건의료전송 정보를 진료 목적으로 전송받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 경우에는 분리 보관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⑨ 정보전송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는 다음 각 호의 보건의료전송정보, 통신전송정보, 에너지전송정보 및 자율전송정보(이하 “전송요구대상정보”라 한다) 전송 내역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정보전송자의 경우 중계전문기관이 대신 보관할 수 있다.

1. 제42조의5제2항 각 호의 사항
2.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에 따른 정보 송수신 기록
3. 전송 요구의 철회, 거절 및 전송 중단 내역 및 사유

- ⑩ 일반전문기관 및 특수전문기관은 제9항에 따른 전송요구대상정보 전송 내역을 제15조의3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가 통지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 ⑪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보전송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전송에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의 구축·운영 비용 등 전송 요구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주요내용 해설

가. 본인전송요구 시 전송 방법 및 절차

- 정보전송자는 정보주체의 본인전송요구권 행사 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보호법 제35조의2제1항제3호).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 가능한 형태는 정보주체가 컴퓨터 등에서 편집이 가능한 파일 형식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PDF, XLS, CSV, HTML, JSON 등이 있다.
 - ※ PDF 형식은 정보 확인의 편의성은 있으나 관리·편집이 제한될 수 있어, XLS, CSV, HTML 등 처리에 용이한 형식으로 제공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데이터 활용을 지원할 수 있음
- 또한, 정보전송자는 정보주체가 요구한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인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을 유지해야 한다(보호법 제3조제3항, 시행령 제42조의6제2항).
- 정보전송자는 개인정보 전송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법적 요구사항을 반영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전송해야 한다(시행령 제42조의6제3항제1호).
 - 정보전송자는 정보주체가 요구한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경우 웹서버에 SSL/TLS (Secure Socket Layer/Transport Layer Security)¹⁾와 같은 암호화 기반 인터넷 보안 프로토콜을 활용하거나 웹서버에 암호화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1) 웹브라우저와 웹서버 간 데이터를 안전하게 주고받기 위해 암호화 기술이 적용된 보안 프로토콜

■ 정보전송자는 정보 유출 및 오전송 방지를 위하여 정보주체만이 접근 가능한 전송 경로를 확보하여 전송해야 한다.

- 구체적으로 정보주체 본인확인을 위한 추가적 인증수단 적용, 캡차(CAPTCHA) 적용, 로그인 실패에 대한 임계치 설정 등의 조치를 통해 크리덴셜 스테핑 또는 자동화된 봇을 통한 접근 시도 등으로 정보가 유출 및 오전송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정보주체의 기기(예: 스마트폰, 태블릿PC와 같은 통신단말장치)나 본인 명의의 전자우편, 클라우드로 전송해야 한다.

나. 제3자전송요구 시 전송 방법 및 절차

■ 정보전송자는 제3자전송요구에 있어서 전송의 안정성 및 신뢰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①정보 전송 시 안전한 알고리즘으로 암호화 전송하는 방식, ②정보전송자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일반수신자 사이에 미리 정한 방식, ③상호 간 식별·인증할 수 있는 방식 그리고 ④상호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전송해야 한다(시행령 제42조의6제3항). 이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²⁾ 방식을 의미한다.

- 또한, 정보전송자는 본인전송요구시와 마찬가지로 제3자전송요구시 정보주체가 요구한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인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을 유지해야 한다(보호법 제3조제3항, 시행령 제42조의6제2항).
- 정보전송자는 개인정보 전송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법적 요구사항을 반영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전송해야 한다(시행령 제42조의6제3항제1호).

■ 한편, 정보전송자는 제3자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중계전문기관을 통하여 전송해야 한다(시행령 제42조의6제4항).

- 정보전송자의 표준화·인증 등 전송 업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3자전송요구의 경우 필수적으로 중계전문기관을 통해 정보를 전송하도록 규정하였다.

2)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이란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간 서로 통신할 수 있도록 정해진 명세 또는 인터페이스

■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일반수신자는 생체정보 등 정보주체의 접근수단을 직접 보관하는 방법 등을 통해 정보주체의 이름으로 열람하는 방식으로 사용·보관함으로써 보건의료전송 정보, 통신전송정보 및 에너지전송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되는 등 스크래핑³⁾ 방식의 수집 금지를 규정하였다(시행령 제42조의6제7항).

- ‘정보주체의 접근수단’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 제3자전송요구를 위하여 정보전송자에 등록된 정보주체의 식별자 또는 인증정보, 정보주체의 생체정보를 말한다.
- ‘정보주체의 이름으로 열람하는 방식’이란, 접근수단을 직접 보관하는 방법, 정보주체의 접근수단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는 방법, 접근수단에 대한 지배권, 이용권 또는 접근권 등을 사실상 확보하는 방법을 통해 정보주체의 이름으로 열람하는 방식을 말한다.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과 일반수신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일반수신자로서 처리하는 정보와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처리하는 정보를 분리하여 보관해야 한다(시행령 제42조의6 제8항).

- 이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로서 처리하는 정보와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처리하는 정보를 분리하여 보관함으로써 전송받은 정보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고 국외 유출 등 우려를 해소하며,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 철회 등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함이다.
 - 이때 정보 분리 보관 방식은 물리적 분리 보관 방식으로 제한하지 않고, 논리적 분리 보관 방식을 허용한다. 논리적 분리는 스키마 또는 인스턴스 수준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정보를 보관하는 서버의 물리적 위치는 국내에 한정한다.
 - 다만, 특수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 진료 목적으로 보건의료전송 정보를 「의료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으로 전송받는 경우로서 「의료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 경우에는 분리 보관을 하지 않을 수 있다(시행령 제42조의6제8항 단서).

3) 스크래핑(scraping)은 웹 페이지나 다른 프로그램 화면에서 데이터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데이터 추출 기술을 의미

다. 전송 내역 보관 및 통지 등

■ 정보전송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어디로, 언제 전송되었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전송 내역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시행령 제42조의6제9항).

- 정보전송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는 ①전송요구권 행사를 위해 정보주체가 특정한 사항*, ②정보주체의 전송 요구에 따른 정보 송수신 기록, ③전송 요구의 철회, 전송 요구 거절 및 전송 중단 내역 및 사유를 보관해야 한다.

* 전송 요구 목적, 전송 요구를 받는 자,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자,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정기적 전송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 전송 요구의 종료시점,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등(시행령 제42조의5제2항)

- 다만, 중계전문기관을 통해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정보전송자는 중계전문기관이 대신하여 개인정보 전송 내역을 보관할 수 있다(시행령 제42조의6제9항 단서).

■ 일반전문기관 및 특수전문기관은 전송 내역을 연 1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시행령 제42조의6제10항).

- 일반전문기관 및 특수전문기관은 전송 내역을 ①서면 · 전자우편 · 전화 · 문자전송 등 정보주체가 통지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또는 ②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알림창을 통해 알리는 방법으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시행령 제42조의6제10항, 제15조의3제4항).

- 일반전문기관 및 특수전문기관이 보호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이용·제공 내역의 통지 의무가 없더라도 전송 내역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 일반수신자에게는 개인정보 전송 내역을 통지할 의무가 부과되지 않았으나, 위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의무가 부과된 경우에는 당연히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통지하여야 함

- 아울러, 일반전문기관 및 특수전문기관은 전송 내역을 보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집 출처 등 통지와 보호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의 통지와 같이할 수 있다.

- 다만, 정보주체가 통지에 대한 거부의를 표시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시행령 제42조의6제10항 후단).

■ 정보주체는 정보전송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 방법에 따라 본인전송요구에 따른 전송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제3자전송요구에 따른 전송 내역은 정보수신자 및 개인정보전송지원 플랫폼을 통해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시행령 제42조의6제5항, 제42조의16제2항).

3 질의 응답

Q1 | 정보주체는 오프라인으로 전송 요구가 가능한지?

답변 : 보호법령상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는 오프라인 방식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현재 전송 요구 시스템 여건 및 정보수신자의 대면 창구 운영 제약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을 통한 전송 요구를 우선 시행함

Q2 | 정보전송자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여 수탁기관이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 수탁기관이 전송 업무를 수행해도 되는지?

답변 : 개인정보 전송 요구에 따른 전송 이행도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므로 전송 업무를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수행 가능함

Q3 | 정보주체가 정보수신자를 통하지 않고 정보전송자에게 직접 제3자전송요구가 가능한지?

답변 : 보호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제3자전송요구의 경우 정보수신자가 정해진 요건을 갖춰서 지정·등재되고 중계전문기관과 연계하는 등 정보를 수신할 준비가 되어야 전송이 가능하므로 현재 전송 절차상 정보수신자를 통하여야만 전송 요구가 가능함

따라서 정보전송자는 정보주체에게 제3자전송요구와 관련해서, 정보수신자가 운영하는 서비스를 통해 할 수 있고 해당 서비스는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온마이데이터, onmydat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을 안내할 필요가 있음

Q4 | 전송요구대상정보에 대한 스크래핑 방식의 수집을 허용하는지?

답변 : 마이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따라 고시로 정한 전송 요구 대상 정보에 대하여 스크래핑 방식의 수집을 금지하고 표준API를 활용하도록 함

Q5

전송받은 정보에 대해 논리적 분리 보관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답변 : 전송받은 정보의 분리 보관은 전송받은 정보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고 국외 유출 등의 우려를 해소하며,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 철회 등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송받은 정보와 기존에 처리하고 있는 정보를 분리 보관하도록 한 것임

따라서 구체적인 논리적 분리 방식은 정보수신자가 판단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보장하기 위한 측면에서 스키마 또는 인스턴스 수준 이상의 분리 보관이 권고되며, 정보를 보관하는 서버의 물리적 위치는 국내에 한정됨

Q6

일반전문기관으로서 복수의 분야 정보를 전송받는 경우에도 전송받은 정보를 분리 보관해야 하는지?

답변 : 시행령 제42조의6제8항에서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는 정보수신자로서 처리하는 정보와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처리하는 정보를 분리보관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일반전문기관이 복수의 분야 정보를 전송받더라도 분야별로 정보를 분리 보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Q7

일반수신자는 개인정보 전송 내역을 통지할 의무가 없는지?

답변 : 일반수신자는 시행령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자로서, 전송받은 정보의 활용이 제한되므로 전송 내역에 대한 통지 의무가 없음

다만, 보호법 제20조의2에서 일정 기준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부과되는 이용·제공 내역 통지의무는 적용됨

Q8

정보전송자는 본인전송요구에 따른 전송 방법 마련시 기존에 제공 중인 서비스 이용 조회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지?

답변 : 정보전송자는 시행령 42조의4 제2항에 따라 고시로 정한 전송요구대상정보 외에 자율적으로 정한 자율전송정보를 정보주체에게 전송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 특성과 정보주체의 실질적 수요를 고려하여 기존 서비스 이용 조회 기능* 등을 활용하여 전송 요구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 항목을 자체적으로 정하여 본인전송요구 다운로드 기능을 구현할 수 있음

*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제공했거나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생성된 본인의 개인정보를, 서비스 제공자가 정한 방식과 범위 내에서 화면에 표시되는 형태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제공

다만, 이 경우에도 서비스 이용 조회 기능과는 구별되도록 별도 본인전송요구 메뉴 구성 등을 통해 정보주체가 본인전송요구 권리행사를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정보주체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편집이 가능한 파일 형식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Q9

정보전송자가 본인전송요구에 대하여 안전한 전송을 위해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답변 : 정보전송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본인전송요구를 받은 경우, 시행령 제42조의6 제3항에 따라 전송의 안전성 및 신뢰성이 보장되도록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해 암호화하여 전송해야 하며, 정보 유출 및 오전송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주체만 접근할 수 있는 전송 경로로 전송해야 함

한편, 정보주체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본인전송요구를 대리할 수 있음. 다만, 대리인이 자동화된 도구를 사용하여 본인전송요구를 대리할 경우, 정보 접근 수단의 위임에 따른 위험, 오류 발생 가능성, 정보주체의 통제력 저하 등 여러 기술적·관리적 한계가 발생할 수 있고, 자동화된 공격이나 크리덴셜 스티핑과 구별이 어려울 수 있음. 따라서, 정보전송자는 크리덴셜 스티핑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와 사전 협의된 경우에만 자동화된 도구에 의한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용약관 예시 : “사전 허락 없이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하여 서비스 회원으로 가입을 시도 또는 가입하거나, 서비스에 로그인을 시도 또는 로그인 하는 등 ...(중략)... IP를 지속적으로 바꿔가며 접속하는 행위, CAPTCHA를 외부 솔루션 등을 통해 우회하거나 무력화 하는 행위 등을 시도해서는 아니된다.”

6 전송 요구의 변경·철회, 거절 및 전송 중단

- 정보주체는 정보수신자를 통하여 자신의 전송 요구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으며, 정보전송자, 개인 정보관리 전문기관, 일반수신자는 전송 요구에 대한 변경 및 철회 방법과 절차를 전송 요구 당시의 방법과 절차보다 어렵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정보전송자는 정보주체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범죄에 악용되는 등 부정한 방법의 요구 등에 대하여 전송을 거절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1 법령

보호법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⑤ 정보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중단할 수 있다.

시행령

제42조의5(전송 요구의 방법 등) ⑤ 정보주체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송 요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전송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는 전송 요구 변경 및 철회의 방법·절차가 전송 요구 당시의 방법·절차보다 어렵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2조의8(전송 요구의 거절 및 전송 중단 등) ① 법 제35조의2제6항에서 “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2.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열람의 제한 또는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요구대상정보의 전송이 제3자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4.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5. 제42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 사항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6. 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7. 정보주체의 인증정보를 탈취하는 등 부당한 방법에 의한 전송 요구임을 알게 된 경우
8. 정보주체 본인,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또는 일반수신자가 아닌 자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9.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어 정보주체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는 경우
 10. 정보주체가 동일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하게 반복적으로 전송을 요구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1. 정보주체가 제3자의 기망이나 협박 때문에 전송 요구를 한 것으로 의심될 만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중단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정보전송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중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실 및 그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 또는 일반수신자를 통하여 전송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일반 수신자를 통하여 통지할 수 있다.

2 주요내용 해설

가. 전송 요구의 변경·철회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자신의 전송 요구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보호법 제35조의2제5항, 시행령 제42조의5제5항 전단).

- 전송 요구의 변경·철회를 어렵게 만든다면, 변경·철회에 대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사의 제한이 생기게 되므로 정보전송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일반수신자는 전송 요구에 대한 변경 및 철회 방법과 절차를 전송 요구 당시의 방법과 절차보다 어렵지 않도록* 해야 한다(시행령 제42조의5제5항 후단).

* 웹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전송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경로를 통해 기존의 전송 요구 내역을 확인하고 철회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고, 철회를 신청할 때 철회 의사를 여러 차례 확인하는 등 철회 신청을 방해 하여서는 안됨

- 본인전송요구의 경우 정보전송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본인전송요구의 변경 및 철회 방법에 대해서 게재해야 하며, 정보주체는 이러한 방법에 따라 전송 요구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제3자전송요구의 경우 정보주체는 정보수신자를 통하여 전송을 요구하기 때문에 해당 정보수신자를 통해 전송 요구의 변경 및 철회를 할 수 있다.
 - 전송 요구의 변경·철회 시 정보수신자는 정보주체에게 전송요구서 목록을 제공하고, 정보주체는 변경 또는 철회하고자 하는 전송요구서를 선택하여 변경 또는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3자전송요구의 철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을 통하여도 가능하다.
 -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 철회 시 중계전문기관은 정보수신자 또는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으로부터 받은 접근토큰과 전송요구서를 폐기하고 폐기 이력을 저장하게 된다.

나. 전송 요구의 거절 및 전송 중단

■ 한편, 정보주체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제3자의 기망이나 협박 등에 의한 전송 요구로 의심 될 만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전송이 제한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중단할 수 있다(보호법 제35조의2제6항, 시행령 제42조의8제1항)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제1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열람의 제한 또는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제2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③ 법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요구대상정보의 전송이 제3자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제3호)

- 정보주체가 전송 요구한 정보 중에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등 제3자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함

④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제4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① 정보주체는 제35조에 따른 열람, 제35조의2에 따른 전송, 제36조에 따른 정정·삭제,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제37조의2에 따른 거부·설명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2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 사항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제5호)

본인전송요구 시 특정 사항	제3자전송요구 시 특정 사항
① 전송 요구 목적 ②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① 전송 요구 목적 ② 전송 요구를 받는 자 ③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자 ④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⑤ 정기적 전송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 ⑥ 전송 요구의 종료시점 ⑦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⑥ 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제6호)

⑦ 정보주체의 인증정보를 탈취하는 등 부당한 방법에 의한 전송 요구임을 알게 된 경우(제7호)

⑧ 정보주체 본인,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또는 일반수신자가 아닌 자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제8호)

⑨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어 정보주체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는 경우(제9호)

⑩ 정보주체가 동일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하게 반복적으로 전송을 요구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제10호)

- 과도하게 반복적으로 전송을 요구하는 것은 정보의 변경이 없을 정도로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전송을 요구하는 등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송 요구를 하는 것을 의미함

⑪ 정보주체가 제3자의 기망이나 협박 때문에 전송 요구를 한 것으로 의심될 만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중단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제11호)

■ 정보전송자가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중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실 및 그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일반수신자를 통하여 전송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일반수신자를 통하여 통지할 수 있다(시행령 제42조의8제2항).

3 질의 응답

Q1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전송 요구를 철회하는 경우, 기존에 전송받은 정보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답변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전송 요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한 시점부터 전송 요구는 중단되나, 서비스 이용 철회 또는 탈퇴하지 않는 이상 기존에 전송받은 정보가 삭제되지는 않음
정보수신자는 정보주체로부터 전송 요구의 철회를 요청받을 경우, 정보주체에게 철회하더라도 기존 전송받은 정보가 삭제되는 것은 아님을 알리고, 기존 전송받은 정보를 삭제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Q2 |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를 거절 또는 중단하는 경우 사유를 반드시 통지하여야 하는지?

답변 : 정보전송자는 시행령 제42조의8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실 및 그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사유를 알려야 함

※ 자세한 사항은 '부록 - ①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 및 이행 절차 - 8. 전송 요구 거절 · 중단(151쪽)' 참고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보호법 제35조의3)

III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보호법 제35조의3)

1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 및 지정요건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정보전송자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다른 기관이나 기업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중계를 지원하거나, 전송받은 정보를 관리·분석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말한다.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를 보호법 제35조의3제1항 및 시행령 제42조의9에서 중계전문기관,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으로 구분하고, 업무 및 전송받는 정보의 민감도 등에 따라 갖춰야 하는 지정요건 세부기준을 차등화하여 규정하였다.

1 법령

보호법

제35조의3(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제3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권 행사 지원
2.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 전송시스템의 구축 및 표준화
3.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의 관리·분석
4. 그 밖에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를 전송·관리·분석할 수 있는 기술수준 및 전문성을 갖추었을 것
2.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안전성 확보조치 수준을 갖추었을 것
3.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재정능력을 갖추었을 것

③ ~ ⑦ (생략)

⑧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42조의9(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 등) ①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중계전문기관: 법 제35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로서 개인정보 전송 중계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고 관련 시스템을 운영하는 업무 및 정보전송자의 전송을 지원하는 업무(이하 “중계 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자
 2. 일반전문기관: 법 제35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로서 통합조회, 맞춤형 서비스, 연구, 교육 등을 위하여 정보전송자로부터 전송받은 개인정보(보건의료전송정보는 제외한다)를 관리·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3. 특수전문기관: 법 제35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로서 통합조회, 맞춤형 서비스, 연구, 교육 등을 위하여 정보전송자로부터 전송받은 보건의료전송정보를 관리·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 ② 중계전문기관은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 업무를 함께 수행해서는 안 된다.
- ③ 중계전문기관은 중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연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④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계전문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2조의11(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세부기준) ①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별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기술수준 및 전문성을 모두 갖추는 것
 - 가.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 등을 증대하고 정보주체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 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관리 계획이 적정할 것
 - 다.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및 기술을 갖추고 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준을 모두 갖추는 것
 - 가.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는 것
 - 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호체계를 적정하게 갖추는 것
3. 다음 각 목의 재정능력을 모두 갖추는 것(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 가. 재무구조가 건전하고 안전성이 있을 것
 - 나.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본금[법인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을 말하고,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단체가 보유하는 자산의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갖추는 것
 - 1) 중계전문기관: 자본금 10억원 이상
 - 2) 일반전문기관 및 특수전문기관: 자본금 1억원 이상

다.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할 것(법 제39조의7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보험·공제의 최저가입금액 또는 준비금의 최소적립금액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지정권자는 보호위원회에 요청(보호위원회가 지정권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하여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요건 세부기준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심사 없이 해당 지정요건 세부기준을 갖춘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요건 세부기준 전부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제1호 및 제2호의 기관·법인 또는 단체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전송정보를 전송받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제2호 외의 공공기관

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6조(지정요건 세부기준) 영 제42조의11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및 기술”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호체계”는 별표 3과 같다.

2 주요내용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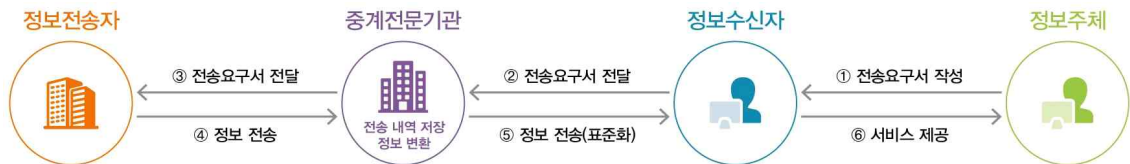
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유형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중계전문기관,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으로 구분된다. 중계전문기관은 정보전송자와 정보수신자 간 개인정보의 전송을 중계하는 기관이며, 일반전문기관과 특수전문기관은 제3자전송요구에 따라 정보를 전송받아 관리·분석하는 정보수신자를 말한다(보호법 제35조의3제1항, 시행령 제42조의9제1항).

① 중계전문기관

- 중계전문기관은 정보전송자와 정보수신자 간 개인정보 전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전송시스템의 구축 및 표준화 업무로서(보호법 제35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 개인정보 전송 중계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고 관련 시스템을 운영하는 업무 및 정보전송자의 전송을 지원하는 업무(이하 '중계업무')를 수행한다.
-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에 따라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정보전송자와 정보수신자가 개별적으로 전송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 경우 전송설비 구축 등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보전송자의 전송 업무와 관련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이종 분야 간 데이터의 전송·연계가 일관된 체계에서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3자전송요구는 중계전문기관을 통하여 전송하도록 하였다.
- 중계전문기관은 본인 여부 확인에 필요한 정보, 전송 내역 등 전송 중계에 필요한 정보만 처리할 뿐 전송요구대상정보를 보관하지는 않는다.
 - 중계전문기관은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고(시행령 제62조의2제3항), 중계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연계정보(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5제1항)를 처리할 수 있다(시행령 제42조의9제3항).

〈 중계전문기관의 주요 업무 〉



- 보건의료 분야는 보건의료정보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중계전문기관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 또한,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 초기에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계 전문기관이 전송시스템의 구축 및 표준화, 전송을 지원하는 중계전문기관의 업무 외에 일반전문기관 또는 특수전문기관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다(시행령 제42조의9제2항).

② 일반전문기관

- 일반전문기관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의 관리·분석하는 업무로서 통합조회, 맞춤형 서비스, 연구, 교육 등을 위하여 정보전송자로부터 전송받은 개인정보(보건의료전송정보는 제외)를 관리·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보호법 제35조의3제1항제3호).
- 일반전문기관은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한 통신, 에너지 등 다른 분야의 정보를 전송받을 수 있다.

③ 특수전문기관

- 특수전문기관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의 관리·분석하는 업무로서 통합조회, 맞춤형 서비스, 연구, 교육 등을 위하여 정보전송자로부터 전송받은 보건의료전송정보를 관리·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보호법 제35조의3제1항제3호).
- 특수전문기관과 일반전문기관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동일하지만 특수전문기관은 보건의료전송정보만 전송받을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유형 (시행령 제42조의9) 〉

구분		중계전문기관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근거		보호법 제35조의2제2항제1호 및 제35조의3, 시행령 제42조의9		
자격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업 무	근 거	보호법 제35조의3제1항 제1호 및 제2호 업무	보호법 제35조의3제1항 제3호 업무	보호법 제35조의3제1항 제3호 업무
	업 무	전송 중계에 필요한 시스템 운영 및 기능 제공, 정보전송자 전송 지원	개인정보(보건의료전송정보 제외)를 관리·분석하여 통합조회, 맞춤형 서비스, 연구, 교육 등에 이용	개인정보(보건의료전송정보)를 관리·분석하여 통합조회, 맞춤형 서비스, 연구, 교육 등에 이용
전송 정보		-	통신전송정보, 에너지전송정보 등	보건의료전송정보

나. 지정요건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①개인정보를 전송·관리·분석할 수 있는 기술 수준 및 전문성 ②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안전성 확보조치 수준, ③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재정능력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보호법 제35조의3제2항, 시행령 제42조의11).

① 기술수준 및 전문성

- **(사업계획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사업계획서는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 등을 증대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반하여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정보주체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등 정보주체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타당하고 건전한 사업계획을 갖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 사업계획서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사업 목적,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운영 방식,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특히,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필요한 내용이어야 하며, 정보주체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 사업계획서 주요 작성 내용 〉

구 분	주요 내용
1. 서비스 개요	• 목적 및 추진 전략 • 서비스명(사업명), 서비스 특징, 서비스 내용 • 활용 데이터(전송요구대상정보, 전송 주기, 보유 기간, 식별자 등) • 기대효과(우수성, 공익성 등)
2. 기관 개요	• 조직 및 인력 운영 • 운영 예산 계획 • 유관 사업 실적(해당 시)
3. 이용자(정보주체) 권리 보호 방안	• 이해상충 방지 체계(이해상충 내용, 방지방안, 발생시 대응방안) • 민원처리 프로세스(민원 접수 방법, 민원 대응 절차) • 서비스 가입 및 탈퇴 방법

※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중계·일반·특수) 지정안내서」 참고

- **(개인정보 관리 계획)**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개인정보를 전송, 관리·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하므로, 전송 요구의 목적, 정보 항목 등 전송 요구의 계획부터 정보의 처리 단계별 조치 계획, 정보의 추가적인 활용, 전송 요구의 철회 및 전송 중단 방안의 구현 등 전송이 종료되기까지 각 절차별로 개인정보 관련 법령에 맞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한 관리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관리 계획서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처리 단계별 흐름도 등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작성되어야 한다.

〈 개인정보 관리 계획서 주요 작성 내용 〉

구 분	주요 내용
1. 전송 요구 계획	• 전송 요구 계획서(전송 요구 목적, 전송요구대상정보, 전송 요구 주기 및 기간,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등) • 전송 요구 내용 변경(변경 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 동의 방법)
2. 개인정보 처리 계획	• 전체 개인정보 흐름도 • 개인정보 처리 계획서(수집 · 이용 목적 · 항목 · 방법 및 파기 방법) • 관리 · 분석 및 분리·보관 방법
3. 전송 요구 철회, 전송 중단 방법	•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 변경, 철회, 전송 중단 방법 •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 변경, 철회, 전송 중단 시 대응 절차

※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중계·일반·특수) 지정안내서」 참고

- **(설비 및 기술)**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적정 수준 이상의 설비와 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는 정보의 전송과 처리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정보의 손실, 위 · 변조, 불법 접근 등을 예방하고 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보안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세부기준은 업무별로 차등화하여 규율하고 있다. 중계전문기관은 안정적인 전송 중계를 위하여 그리고 특수전문기관은 보건의료전송정보 등 전송받는 정보의 민감도를 고려하여 일반전문기관보다 보호체계 관련 일부 세부기준을 강화하여 규정하였다(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6조, 별표 3).
 - 중계전문기관이 개인정보 전송 중계업무 및 정보전송자가 전송해야 하는 정보의 전송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영하는 시스템을 중계 관련 시스템이라 한다. 중계 관련 시스템은 전송요구서 관리, 전자서명 검증, 접근권한 인가, 이용기관 및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 연계, 개인정보 전송 이력의 기록 · 보관 기능 등을 갖춰야 한다. 또한, 중계전문기관은 중계업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중계 관련 시스템과 그 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분리, 중계전문기관 업무의 가용성 및 연속성 보장을 위한 체계 구축 및 관리 방안 마련 등을 갖춰야 한다.
 - 일반전문기관과 특수전문기관의 경우에는 전송받는 정보의 분리·보관 기능 및 전송 내역, 전송받은 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내역의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 제출 기능을 구현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대상 전송 내역의 통지 절차 등의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전송 이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전송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자에게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과 연계하여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 내역 등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시행령 제42조의1제3항), 이 경우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은 중계전문기관을 통해 제출 가능

② 안전성 확보조치

-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보호법 제29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조치의무를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
- **(보호체계)**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호체계를 적절하게 갖추고 있어야 한다. 보호체계는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와 관련한 사항 중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해 특별히 적정한지를 확인 및 심사하여야 하는 것을 구체화하여 규정한 것이다. 보호체계 관련 사항은 전문기관 지정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다(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6조, 별표 3).
 - 특히, 특수전문기관은 전송받는 정보의 민감성, 중계전문기관은 중계업무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 ㉠ 유출 및 해킹을 신속하게 탐지·대응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관리용 단말기의 지정·관리 등의 조치, ㉢ 관리용 단말기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 조치를 추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암호화 관련하여 ㉤ 암호 키의 안전한 관리 체계 구축, ㉥ 접속기록의 자동화된 분석 체계를 갖추도록 추가로 규정하였다.
 - 또한, 중계전문기관은 중계업무를 하는 특성에 따라 ㉠ 안전한 백업 및 복구 체계(소산 포함), ㉡ 가용성 및 연속성 보장을 위한 주요 지표 마련 및 관리 방안, ㉢ 전담조직 및 담당인력을 지정하도록 추가로 규정하였다.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세부기준 주요내용 (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6조, 별표 3) 〉

구 분	지정요건 세부기준
설비 및 기술	• 전송 관리 및 연계, 전송 이력 관리 기능 •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네트워크·보안시스템 구축 ※ 중계전문기관은 업무의 가용성 및 연속성 보장을 위한 이중화 구성, 모니터링, 통지 기능
보호체계	• (보호정책) 전문기관 업무 관련 내부 관리계획, 전송 이력 기록·보관 및 점검 방안 ※ 일반·특수전문기관은 정보주체 대상 전송 내역의 통지 절차 추가 • (접근권한·통제 등) 접근권한 관리·점검, 접근통제, 안전한 암호화 적용, 접속기록의 보관·점검, 악성 프로그램 예방·탐지·대응 조치 ※ 중계·특수전문기관은 접속기록 이상행위 모니터링, 관리용 단말기 지정·추가인증 적용, 인터넷망 차단 조치, 암호 키의 안전한 관리체계 등 추가 • (물리적 안전조치 등) 물리적 안전조치, 재난·재해 및 장애 대비 비상계획, 백업·복구체계, 출력·복사시 안전조치, 안전한 파기 조치 등 ※ 중계전문기관은 시스템 주요 지표 마련 및 관리, 전담조직 구성 및 담당인력 지정 추가

※ 지정요건 세부기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중계·일반·특수) 지정안내서」 참고

③ 재정능력

- **(재무구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등 업무 수행을 위해 재무구조가 건전하고 안전성이 있어야 한다.
 - 이는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서비스 또는 수행 업무가 중단될 우려가 있고,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유지, 개인정보 유출 또는 시스템 오류 등의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자본금)**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지정 유형에 따라 차등화하여 규정된 자본금을 갖춰야 한다.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재정능력 세부기준 (시행령 제42조의11제1항제3호나목) 〉

구 분	자본금 기준
중계전문기관	자본금 10억 원 이상 (법인은 납입자본금, 법인이 아닌 단체는 해당 단체가 보유하는 자산 가액)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자본금 1억 원 이상 (법인은 납입자본금, 법인이 아닌 단체는 해당 단체가 보유하는 자산 가액)

-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기준)** 지정신청자는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반드시 적립하여야 한다.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 갖춰야 하는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최저가입금액 또는 최소적립금액은 원칙적으로 10억 원이다(시행령 별표 1의2).
 - 지정신청자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외의 공공기관으로서 일반전문기관 또는 중계전문기관으로 지정 신청하거나(시행령 42조의11제2항제2호, 제3호), ㉡ 보건의료전송정보를 전송받는 의료기관(진료 목적에 한함)인 경우(시행령 제42조의11제2항제1호)에는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최저가입금액(최소적립금액)의 기준(보호법 제39조의7 및 시행령 제48조의7, 별표 1의4)이 적용된다.
 - 한편, 지정신청자가 보호법 제39조의7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손해배상책임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및 단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한 자, 다른 법률에 따라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한 개인정보처리자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최저가입금액 또는 최소적립금액의 기준

(시행령 제42조의11제1항제3호다목 관련, 별표 1의2) 〉

구 분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최저가입금액 또는 최소적립금액의 기준
중계전문기관 일반전문기관	10억원. 다만, 제42조의10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42조의11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4에 따른 최저가입금액(최소적립금액)으로 한다.
특수전문기관	10억원. 다만, 제42조의10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42조의11제2항 각 호(제1호의 경우에는 진료 목적으로 보건의료전송정보를 전송받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4에 따른 최저가입금액(최소적립금액)으로 한다.

- **(적용 제외)** 공공기관(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이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한 경우, 지정요건 중 재정능력은 제외한다. 공공기관은 법령에서 위임 또는 설립 목적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국가 사무를 수탁 처리하는 등 공익적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민간 부문과 달리 재정능력을 지정요건에서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지정요건의 심사 생략

■ 지정권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시행령 제42조의11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요건 세부기준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심사 없이 해당 지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는 지정권자가 보호위원회에 요청(보호위원회가 지정권자인 경우는 제외)하여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시행령 제42조의11제2항).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 소속 기관,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보호법 제2조제6호)

- 이는 의료기관, 공공분야 기관의 경우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공익적 목적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체계가 갖춰진 시스템을 통해 정보가 처리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지정요건의 심사를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 다만, 시행령 제42조의11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요건 세부기준 전부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제1호)과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제2호)의 기관법인 또는 단체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 한정한다(시행령 제42조의11제2항단서).
- 지정권자는 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심사가 생략된 지정요건 세부기준과 관련한 신청서류에 대해서는 생략 또는 간소화할 수 있다.

3 질의 응답

Q1 | 일반전문기관은 보건의료전송정보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지?

답변 : 일반전문기관은 시행령 제42조의4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전송정보 외 전 분야의 정보를 전송받을 수 있음. 다만, 일반전문기관 지정 심사시 사업계획서 등이 적정한지 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부합하는 분야의 정보 항목에 대해서만 전송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임

Q2 | 특수전문기관은 보건의료전송정보 외 정보를 전송받아 활용할 수 있는지?

답변 : 특수전문기관은 시행령 제4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전송정보만 전송받을 수 있으며, 만약 그 외 정보를 전송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함

Q3 | 일반·특수전문기관은 개인정보 전송 요구를 통해 전송받은 정보(전송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할 수 있는지?

답변 : 전송정보는 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른 가명정보 처리 특례에 따른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전송정보의 가명처리가 가능
전송받은 정보의 가명정보의 처리는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의 절차를 따르되, 가명 처리 목적 및 가명처리 수준에 대한 자체 적정성 검토(외부전문가 참여必)를 거쳐 가명처리를 하여야 함

※ 보건의료전송정보의 경우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등을 고려하여야 함

Q4 | 일반·특수전문기관은 개인정보 전송 요구를 통해 전송받은 정보(전송정보)와 본래 업무를 위해 기존 보유하고 있는 정보(보유정보)를 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지?

답변 : 전송받은 정보는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전송 요구 목적과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의 수집 목적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음

* (예시) 최적 통신요금 추천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전송받은 정보의 경우, 동일한 목적인 최적 통신요금 추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결합하여 공통된 목적 내에서 활용 가능

※ 보건의료전송정보의 경우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등을 고려하여야 함

Q5

일반전문기관 또는 특수전문기관이 전송받은 정보와 기존에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결합할 경우,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답변 : 일반전문기관 및 특수전문기관이 판단하여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 철회 및 전송받은 정보의 삭제 요청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방식으로 결합하여야 함

다만, 전송받은 정보를 분리 보관하도록 한 취지를 고려할 때,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 철회 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전송받은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DB에서 정보를 결합하는 것이 권고되며, 결합을 위한 별도의 DB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함

Q6

중계전문기관은 특정 분야 내에서만 중계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시행 초기 안정적인 전송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중계전문기관이 다양한 분야의 전송 중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다만, 보건의료 분야는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의료 분야 중계전문기관은 시행령 제42조의10제2항제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예정임

Q7

중계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로부터 중계전문기관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는 수탁자인 경우에도 일반·특수전문기관 업무의 겸영이 제한되는지?

답변 : 중계전문기관은 전송 중계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중계전문기관이 전송받은 정보를 관리·분석하는 일반·특수전문기관 업무를 수행할 경우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전송 체계 확립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시행령 제42조의9제2항에 따라 겸영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중계전문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수탁자는 중계전문기관인 위탁자의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되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 내에서만 처리가 허용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수탁자도 겸영이 제한됨

Q8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손해배상책임 보험·공제 요건은 기존에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가입한 손해배상책임 보험·공제로 갈음될 수 있는지?

답변 : 시행령 제42조의11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손해배상책임 보험·공제 요건은 기존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가입한 손해배상책임 보험·공제의 보장 범위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업무를 포괄하는 경우에는 기존 시행령 제48조의7조 및 별표 1의4에 따라 가입한 보험·공제로 갈음될 수 있음

Q9 | 신용정보법상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를 받은 경우, 보호법상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지정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답변 :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호법 제35조의3에 따라 지정을 받아야 함

다만, 수범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보호법과 신용정보법상 시설·기술 기준이 중복되는 요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생략하는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심사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임

Q10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일반·특수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개인정보(비금융정보)를 전송받는 경우, 신용정보법을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보호법을 따라야 하는지?

답변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과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은 전송받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관련 법률이 상이하므로 각각의 근거 법률에 따라야 함

따라서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허가받은 사업자라 하더라도, 보호법에 따라 일반·특수전문기관으로서 전송받은 정보는 보호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Q11 | 보건의료정보를 활용한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전문기관 지정 신청시 특정 업권에 대한 신청 제한이 있는지?

답변 : 보호법 제35조의3 및 시행령 제42조의9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전문기관은 정보 주체의 권리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의 관리·분석 업무로서 보건의료정보를 활용한 통합조회, 맞춤형 서비스, 연구, 교육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임

따라서 지정신청자가 특수전문기관의 업무에 적합한지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관리 계획서 등을 심사하여 지정할 계획이며, 예를들어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도 개인의 건강 유지, 증진 또는 질병의 사전예방 및 악화 방지 등을 목적으로 서비스 가능함

Q12

일반 · 특수전문기관이 정보주체를 대리해 본인전송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답변 : 일반 · 특수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은 보호법 제38조제1항 및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위임을 받아 본인전송요구권을 대리하여 행사할 수 있음. 한편, 정보주체는 시행령 제42조의4제2항에 따라, 정보전송자가 자율적으로 정한 자율전송정보에 대해서도 본인에게 전송을 요구할 수 있고 정보전송자와 정보주체 간의 서비스 이용 계약에 따라 정보주체가 직접 조회 가능한 대부분의 서비스 정보가 이에 해당될 수 있음

전문기관이 본인전송요구를 대리하는 경우, 본인전송요구를 통해 수신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 본인만이 접근할 수 있는 저장 공간에 안전하게 전송·보관되어야 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송 경로를 확보해야 함. 이를 위해, 제3자 전송 중계 인프라의 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가능한 경우에는 정보전송자와 협의하여 API 직접 연계(중계전문기관을 통한 API 추가 연계 포함) 또는 암호화되고 상호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협의된 스크래핑 방식 등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함

Q13

일반 · 특수전문기관이 정보주체를 대리해 본인전송요구권을 행사하여 전송받은 정보를 통합조회 등에 활용할 수 있나?

답변 : 일반 · 특수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은 보호법 제35조의3조제1항 및 시행령 제42조의9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관리 · 분석하여, 통합조회, 맞춤형 서비스, 연구,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임

보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전송요구권을 대리하여 행사할 경우, 안전한 보관 ·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만이 접근할 수 있는 개인정보저장소를 제공할 수 있고 또한 정보주체와 별도 계약 등을 체결하여 개인정보저장소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통합조회 또는 정보주체 요청에 따른 제3자 전송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전문기관이 제공하는 개인정보저장소는 통합 조회 등을 위한 필수 요건은 아니며 정보주체의 별도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제공하되, 저장소의 이용 목적, 안전 조치 내용,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저장소 이용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장함. 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유출 등 잠재적인 위험 요소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여야 함

* 위 개인정보저장소는 스마트폰의 로컬 저장 공간, 클라우드 기반 저장소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으며, 반드시 정보주체만 접근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함.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화, 접근 통제, 접근 제어 등의 안전성 확보 조치가 강구되어야 함

2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절차

-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이하 “지정신청자”)가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 지정심사(이하 ‘본지정’)하여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지정신청자가 본지정 심사 신청 전에 지정요건 세부기준을 갖추었는지 등에 대한 사전적 검토 절차인 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지정 이후 사업계획서 등이 변경되는 경우 지정권자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법령

보호법

제35조의3(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제35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권 행사 지원
2.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 전송시스템의 구축 및 표준화
3.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의 관리·분석
4. 그 밖에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 ⑦ (생략)

⑧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42조의10(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지정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지정신청서
2. 정관 또는 규약(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사업계획서
4. 개인정보 관리 계획서

5.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6.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②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계전문기관: 보호위원회 또는 중계전문기관이 전송받으려는 정보와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만, 보건 의료전송정보에 관한 중계전문기관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2. 일반전문기관: 보호위원회 또는 일반전문기관이 전송받으려는 정보와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3. 특수전문기관: 보건복지부장관
-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 ④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하기 전에 지정권자에게 제 42조의11에 따른 지정요건 세부기준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42조의12(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지정권자는 제42조의10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42조의11에 따른 지정요건 세부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제42조의10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지정요건 세부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 후 그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내용은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계획서(전송받으려는 정보의 추가 또는 변경을 포함한다)
2. 개인정보 관리 계획서

③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지정권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 제3항에 따른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제42조의11에 따른 지정요건 세부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⑤ 지정권자(보호위원회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하려면 보호위원회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재지정(중계전문기관에 한정한다)
2. 제2항에 따른 변경 승인(일반전문기관 및 특수전문기관의 경우에는 전송요구대상정보와 관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⑥ 지정권자(제1호의 경우에는 보호위원회를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제2항에 따른 변경 승인 및 제4항에 따른 재지정을 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보호위원회에 통지
2. 관보에 공고하거나 지정권자의 홈페이지에 게시(변경 승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⑦ ~ ⑧ 생략

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5조(지정 신청) ①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이하 “지정신청자”라 한다)는 법 제35조의3제1항 및 영 제42조의10제1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에 별표 2에 따른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지정신청자가 일반전문기관과 특수전문기관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지정권자에게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각각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각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접수된 신청서류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지정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지정권자의 업무와 지정 신청의 내용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경우
2. 지정권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지정권자(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한한다)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정권자 및 다른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접수된 신청서류를 소관 기관에 이송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그 사실을 지정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조(지정절차) ① 법 제35조의3제1항 및 영 제42조의12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절차는 서류심사, 현장심사, 종합심사의 순으로 진행된다.

② 지정권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 등이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신청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지정권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제10조에 따른 예비심사를 통과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지정 신청자에게 문서(지정신청자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로 신청한 경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권자의 확인 및 변경, 지정권자 협의 등에 소요되는 기간
2.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자의 신청서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3. 법 또는 영에 따른 의무의 위반과 관련하여 지정신청자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지정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4. 지정심사 중 불가피한 사유, 대규모 사회재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기간

⑤ 지정권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전송 요구 대상 정보와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제5조제2항의 경우 지정권자는 사전에 다른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다른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지정심사(제1항에 따른 서류심사, 현장심사 및 종합심사를 포함한다)를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8조(지정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지정권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35조의3 제2항 및 영 제42조의11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별 세부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심사위원회(이하 “지정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해야 한다.

② 지정심사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정보보호, 회계 및 지정권자가 정하는 관계 분야 등 지정요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되, 7명 이상 15명 이하로 한다.

③ 지정심사위원회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종합심사를 수행한 후 그 심사결과를 지정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지정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기술적인 사항의 자문 등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한국인터넷진흥원
2. 업무 관련성 및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정권자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9조(지정 및 지정서 발급) ① 지정권자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지정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확인하여 지정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신청자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서를 지정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10조(예비심사) ① 영 제42조의10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에 관한 예비심사(이하 “예비심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예비심사신청서에 별표 2에 따른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예비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서류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예비심사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예비심사를 통과한 자는 제2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심사의 내용(예비심사시 조건을 불인 경우 그 조건을 포함한다)을 이행한 후 제5조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이하 이 항에서 “본지정”이라 한다)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지정권자가 예비심사 당시 본지정 신청기한을 따로 정하였거나 예비심사 후 본지정 신청기한의 연장에 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따른다.

④ 예비심사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5조, 제7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예비심사”로 본다.

제11조(변경 승인) ① 영 제42조의12제2항에 따른 변경 승인(이하 “변경 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변경승인신청서에 영 제42조의12제2항 각 호의 변경된 문서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변경승인신청서를 심사하고 승인 여부를 변경 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영 제42조의12제2항에 따른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내용”이란 자구(字句) 수정, 오탈자 정정 등 단순한 변경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④ 변경 승인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7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은 “변경 승인”으로 본다.

제12조(재지정) ① 영 제42조의12제4항에 따라 재지정(이하 “재지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유효 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제5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및 신청서류를 갖추어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재지정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지받을 때까지는 그 지정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② 재지정 심사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재지정”으로 본다.

제14조(지정 등의 공고) 지정권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지정, 재지정 또는 지정취소를 한 경우에는 영 제42조의12제6항 및 제42조의1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지정권자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담당 부서 및 연락처
3. 지정 유효기간(지정 또는 재지정의 경우에 한한다)
4. 취소일자 및 취소사유(지정취소의 경우에 한한다)

2 주요내용 해설

가. 심사의 구분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심사는 예비심사와 본지정 심사로 구분한다.

① 예비심사

- 지정신청자는 시행령 제42조의10제1항에 따른 본지정 심사를 신청하기 전에 지정권자에게 제42조의11에 따른 지정요건 세부기준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시행령 제42조의10제4항).
 - 지정신청자가 본지정 심사 신청 전에 지정요건 세부기준을 갖추었는지 사전에 검토받음으로써 본지정 심사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설비 및 기술 구축 등에 소요되는 투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원하는 경우 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예비심사는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 예비적으로 진행되는 절차로서 지정요건과 관련하여 사전에 검토를 받을 수 있는 절차에 불과하여 지정의 효력을 지니지 않는다. 다만, 예비심사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관리 계획서, 설비 및 기술 등을 동일하게 갖추고 본지정 심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류심사를 간소화하는 등 본지정 심사기간이 1개월 이내로 단축될 수 있다.

② 본지정 심사

- 지정신청자는 시행령 제42조의10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권자는 서류심사, 현장심사, 종합심사 등 지정심사를 통해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시행령 제42조의10, 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5조).

나. 신청서류

■ 지정신청자는 예비심사 또는 본지정 심사 신청인지에 따라 지정신청서에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42조의10, 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5조 및 제10조, 별표 2, 별지 제2호서식).

- **(예비심사)** 예비심사는 지정신청자의 사업계획서(안), 개인정보 관리 계획서(안), 설비 및 시설 구축계획 등이 적절한지를 심사하는 것으로 예비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예비심사신청서(전문기관 지정 고시 별지 제2호서식)에 예비심사를 위해 필요한 신청서류(전문기관 지정 고시 별표 2)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10조제1항).

- **(본지정 심사)** 본지정 심사는 지정신청자가 실제 수행하고자 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관리 계획서, 설비 및 기술 등을 적정하게 갖췄는지를 확인 및 심사하는 것으로, 지정신청자는 ㉠지정신청서, ㉡정관 또는 규약*,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관리 계획서,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지정 신청이 이루어진다(시행령 제42조의10제1항, 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5조제1항).

*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 지정권자는 신청서류 등이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신청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7조제2항).

■ 지정신청자는 공문 및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을 통해 지정신청서 및 신청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시행령 제42조의10제1항, 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5조제1항).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신청서류 (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5조제1항, 별표 2) 〉

구 분	신청서류	
	예비심사	지정
1. 정관 또는 규약	정관 또는 규약(안)	정관 또는 규약
2.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안)	사업계획서 (증명 서류 포함)
3. 개인정보 관리 계획서	개인정보 관리 계획서(안)	개인정보 관리 계획서 (증명 서류 포함)
4.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5.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영 제42조의11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설비 및 기술 증명 서류	설비 및 기술 구축 계획	설비 및 기술을 갖췄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나. 영 제42조의11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안전조치의무 이행 증명 서류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 이행 계획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 이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다. 영 제42조의11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보호체계 증명 서류	보호체계 이행 계획, 전문기관 업무 관련 내부 관리계획(안)	보호체계를 적정하게 갖췄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전문기관 업무 관련 내부관리계획
라. 영 제42조의11제1항 제3호나목에 따른 자본금 증명 서류	자본금(납입자본금, 기본재산 또는 자산의 가액) 증빙자료 또는 조달계획서	자본금(납입자본금, 기본재산 또는 자산의 가액) 증빙자료
마. 영 제42조의11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증명 서류	-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다만, 영 제42조의11제2항에 따라 지정권자는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심사가 생략된 지정요건 세부기준과 관련한 신청서류를 생략 또는 간소화할 수 있다.

■ 지정신청자가 일반전문기관과 특수전문기관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지정권자에게 지정 신청을 각각 해야 한다(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5조제2항).

- 이 경우 지정권자는 사전에 다른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지정권자는 다른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지정심사(서류·현장·종합심사)를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다(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7조제6항).

다. 지정권자 결정 및 변경

■ 지정신청자는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정 신청자로부터 지정 신청을 받은 각 지정권자는 명확한 지정심사를 위해 접수된 신청서류를 소관 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① 지정권자의 결정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보호법 제35조의3제1항).
- 단일 분야의 정보를 전송받는 중계전문기관 및 일반전문기관의 지정권자는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에서 전송받으려는 정보와 업무 관련성*이 높은 기관이 지정권자가 된다(시행령 제42조의10 제2항제1호, 제2호).
 - * 업무 관련성이란 각 중앙행정기관의 직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와 성질, 경향 등에 있어서 연관이 있음을 의미함
 - 이는 전송받으려는 정보와 업무 관련성이 높은 기관이 지정권자가 됨으로써 지정신청자가 지정요건을 충분히 갖추었는지 전문적인 판단을 통해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다만, 보건의료 분야 중계전문기관 및 특수전문기관의 지정권자는 보건의료정보의 특수성 및 업무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되도록 규정하였다(시행령 제42조의10제2항제1호, 제3호).
- 일반전문기관의 경우, 복수 분야의 정보와 관련된 다수의 관계 중앙행정기관 중 하나의 기관을 지정권자로 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지정권자를 보호위원회로 정하도록 하였다(다만, 보건의료전송정보를 포함한 경우에는 특수전문기관 지정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별 지정권자 (시행령 제42조의10제2항) 〉

구분	지정권자
중계전문기관	보호위원회 또는 중계전문기관이 전송받으려는 정보와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단, 보건 의료 분야 중계전문기관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
일반전문기관	보호위원회 또는 일반전문기관이 전송받으려는 정보와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전송받으려는 정보 분야가 복수인 경우(예 : 통신, 에너지), 보호위원회가 지정
특수전문기관	보건복지부장관

〈 전송 정보가 복수 분야인 경우 지정권자 결정 기준 〉

- 보건 의료 전송정보와 에너지 전송정보를 복수로 전송받는 경우
 - 일반전문기관 및 특수전문기관 각각 지정 필요
 - (일반전문기관 지정권자) 보호위원회 또는 에너지 전송정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 (특수전문기관 지정권자) 보건복지부
 - 보건 의료 전송정보와 통신 전송정보를 복수로 전송받는 경우
 - 일반전문기관 및 특수전문기관 각각 지정 필요
 - (일반전문기관 지정권자) 보호위원회 또는 통신 전송정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 (특수전문기관 지정권자) 보건복지부
 - 에너지 전송정보와 통신 전송정보를 복수로 전송받는 경우
 - 보건 의료 전송정보 외의 전송받는 정보(통신, 에너지 등)가 복수인 경우, 지정권자는 보호위원회
- ※ 개인 신용정보를 전송받는 경우
- 신용정보법에 따른 본인 신용정보관리업 허가 대상으로 지정권자는 금융위원회

② 지정권자의 변경

- 지정 신청을 받은 각 지정권자는 원활한 지정심사를 위해 소관 업무와 지정 신청의 내용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거나, 지정 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신청서류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해야 한다(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5조제3항).

* 이송 사유: ① 지정권자의 업무와 지정 신청의 내용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경우, ② 지정권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예 : 인력 부족, 예산 미편성 등으로 지정심사 수행이 어려운 경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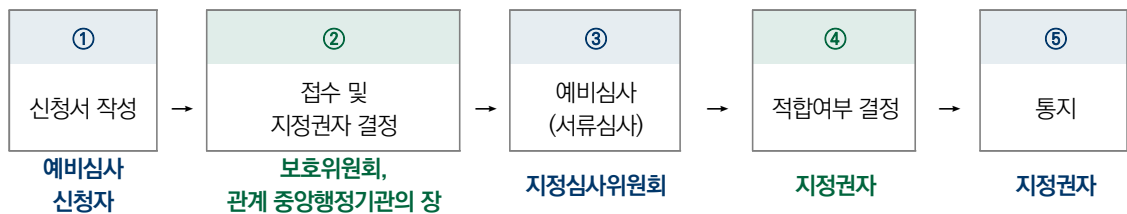
- ‘지체 없이’란, 몇 시간 또는 며칠과 같이 물리적인 시간 또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권자에게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이에 따른 지체는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권자 변경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신청서류를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

- 보호위원회는 지정 신청을 받은 지정권자(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한한다)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 및 다른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접수된 신청서류를 소관 기관에 이송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해당 지정권자 및 다른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접수된 신청서류의 이송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5조제4항).
 - 이는 지정 신청의 내용에 따라 전송받으려는 정보의 업무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가 지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소관 기관을 지정권자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보호위원회가 신청서류를 다른 지정권자로 이송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정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한편, 지정 신청을 받은 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정)를 확인해야 한다(시행령 제42조의10제3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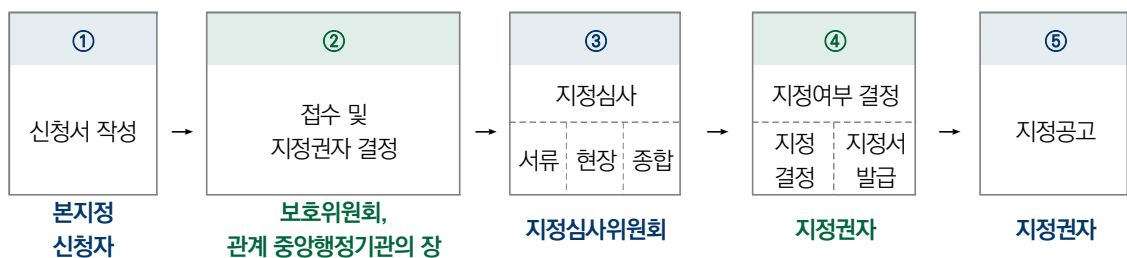
라. 지정 심사

■ 예비심사는 서류심사에 한하여 진행되며, 본지정 심사는 서류심사, 현장심사, 종합심사의 순으로 진행된다. 서류심사는 사업계획서 및 개인정보 관리 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대한 심사이며, 현장심사는 설비 및 기술 등을 실제 갖췄는지 확인하는 절차이다. 종합심사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의 결과를 토대로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는 절차이다.

〈 예비심사 단계 〉



〈 본지정 단계 〉



① 예비심사

- 지정권자는 예비심사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서류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예비심사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10조제2항).
- 예비심사를 통과한 자는 예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심사의 내용을 이행한 후 본지정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10조제3항).
 - 다만, 예비심사 이후 지정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설비 구축 등에 6개월보다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지정권자가 예비심사 당시 본지정 신청기한을 따로 정하였거나 예비심사 후 본지정 신청기한의 연장에 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따르도록 규정하였다.
- 예비심사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사항(신청서류, 심사 방식 및 심사 기간) 외에는 지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시행령 제42조의10제4항, 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10조제4항).

② 본지정 심사

- 지정심사는 서류심사, 현장심사 및 종합심사의 순서로 진행된다(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7조제1항).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본지정 심사단계 〉

심사단계	심사 내용
서류심사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서류심사 진행
현장심사	설비 및 기술, 보호체계 등을 실제 갖췄는지를 현장심사 진행
종합심사	서류심사, 현장심사 결과를 기반으로 지정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종합심사 수행 및 결과보고서 작성

- 지정심사는 신청받은 날의 익일로부터 3개월(예비심사를 통과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진행되며, 부득이한 경우 2개월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한편, 실질적으로 지정요건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다음의 각 기간에 대해서는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였다(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7조제3항, 제4항).

〈 심사기간 미산입 사유 (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7조제4항) 〉

- 지정권자의 확인 및 변경, 지정권자 협의 등에 소요되는 기간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의 신청서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지정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 불가피한 사유, 대규모 사회재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기간

- 지정신청자가 일반전문기관과 특수전문기관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각 지정권자는 사전에 다른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지정권자는 다른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지정심사(서류·현장·종합심사)를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다(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7조제6항).
 - 복수 분야의 정보를 결합한 서비스의 경우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으로서 모두 지정이 적합하다고 인정되어야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으로 동시 지정되며(사업계획서에도 명시 필요), 각각이 별도 서비스인 경우에는 각 지정권자가 심사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마. 지정심사위원회 구성

- 지정권자는 개인정보 보호, 회계 및 지정권자가 정하는 관계 분야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정요건을 심사해야 한다(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8조 제1항, 제2항).
- 지정심사위원회는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며, 종합심사를 수행한 후 그 심사결과를 지정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8조제2항, 제3항).
- 지정권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업무 관련성 및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정권자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기술적인 사항의 자문 등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8조제4항).

바. 지정 및 지정서 발급

■ 지정권자는 지정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확인하여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가 지정요건 세부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등 지정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 신청자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시행령 제42조의12제1항 전단 및 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9조제1항).

- 지정권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전송요구대상정보와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7조제5항).
- 한편, 지정권자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계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는 경우, 보호위원회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시행령 제42조의12제5항제1호).

■ 지정권자는 행정기본법에 따라 행정청의 재량행위로서 지정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행정기본법 제17조). 예를 들어, 지정권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에 대한 기능적합성 심사 및 보안취약점 점검* 등을 서비스 개시 전까지 받아 제출하도록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 서비스·시스템 기능에 대한 적합성 여부 심사(API 적합성, 스크래핑 여부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서비스·시스템 보안성에 대한 취약점 점검 등

- 또한, 지정권자는 지정신청자가 지정요건 세부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해당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후 그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시행령 제42조의12제1항 후단).
- 만약 조건부 지정을 받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지정권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시행령 제42조의14제1항).

■ 지정권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정신청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7조제3항),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한 경우 지정서를 지정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9조제2항, 별지 제3호서식).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전자문서로 신청한 경우 전자문서를 포함

- 한편, 지정권자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 보호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42조의12제6항제1호).

- 지정권자는 정보주체 등이 지정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42조의12제6항제2호, 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14조).

* 공고 내용: ①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명칭 및 주소, ②담당 부서 및 연락처, ③지정 유효기간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에 대한 유효기간은 3년이며(시행령 제42조의12제3항),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재지정을 신청해야 한다(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12조제1항).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 재지정 신청기간 내에 재지정을 신청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효력은 상실된다.

사. 변경 승인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사업계획서(전송받으려는 정보의 추가 또는 변경 포함) 또는 개인정보관리 계획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시행령 제42조의12제2항).
- 사업계획서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업무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고, 개인정보 관리 계획서에는 전송받은 정보에 대한 활용·관리 방안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이를 변경할 경우 정보주체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업계획서 및 개인정보 관리 계획서 변경은 지정권자로부터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것이다.
- 다만,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관리 계획서의 자구(字句) 수정, 오탈자 정정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내용의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시행령 제42조의12제2항, 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11조제3항).
- 변경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변경승인신청서에 변경된 문서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11조제1항, 별지 제4호서식), 지정권자는 제출된 변경승인신청서를 심사하고 승인 여부를 변경 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11조제2항).
- 변경 승인 심사의 경우 필요시 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현장심사를 다시 시행하는 등 지정에 관한 절차를 준용하여 진행할 수 있다(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11조제4항).

■ 한편, 지정권자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는 경우, 보호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전문기관 및 특수전문기관의 경우에는 전송요구대상정보와 관련된 경우에 한하여 보호위원회와 미리 협의하면 된다(시행령 제42조의12제5항제2호).

- 또한, 지정권자(관계 중앙행정기관인 경우)는 변경 승인에 관한 사실을 보호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42조의12제6항제1호).

아. 재지정

■ 지정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의 효력은 상실된다. 만약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재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재지정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때까지는 지정의 효력이 유효하여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서의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12조제1항).

- 재지정 또한 지정의 일종이기 때문에 재지정 심사 및 절차는 지정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12조제2항).

■ 지정권자는 지정요건 세부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시행령 제42조의10제4항). 다만, 지정권자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계 전문기관 재지정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보호위원회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시행령 제42조의12제5항제1호).

■ 한편, 지정권자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재지정한 경우 재지정에 관한 사실을 보호위원회에 통지해야 하며(시행령 제42조의12제6항제1호), 지정권자는 정보주체 등이 재지정에 관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해당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시행령 제42조의12제6항제2호, 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14조).

* 공고 내용: ①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명칭 및 주소, ②담당 부서 및 연락처, ③지정 유효기간

3 질의 응답

Q1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비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답변 : 시행령 제42조의10제4항에 따른 예비심사의 경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가 지정 신청을 하기 전, 지정권자에게 사업계획서 등 지정요건 세부기준을 갖추었는지 사전에 검토받아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투자비 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예비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님

Q2 | 예비심사를 통과한 경우에도 본지정 신청 시 서류, 현장, 종합심사를 모두 받게 되는 것인지?

답변 : 예비심사는 시행령 제42조의10제4항 및 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안), 개인정보 관리 계획(안), 시설 및 설비 구축 계획 등에 대한 서류심사만 진행하는 것임

본지정 신청 시 예비심사때와 동일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관리 계획서 등에 대해 심사하는 경우에는 실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었는지 현장심사를 중심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이후 종합심사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Q3 | 활용하고자 하는 정보 분야별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을 각각 받아야 하는지?

답변 : 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5조에 따라 일반전문기관과 특수전문기관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지정권자에게 지정을 받아야 함

다만, 전송받고자 하는 정보가 시행령 제42조의4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정보 외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전문기관으로만 지정받으면 됨

Q4

일반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 확대되는 분야의 정보를 받고자 하는 경우 다시 지정을 받아야 하는지?

답변 : 일반전문기관이 전송받고자 하는 정보를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42조의12제2항에 따른 변경 승인을 신청하여야 함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관리 계획서에 변경되는 정보 항목에 대한 내용을 수정 및 포함하여 작성하고, 변경된 해당 문서를 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11조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와 함께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함

3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업무 중지 또는 폐지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권자 등에 대한 통지, 개인정보의 파기, 업무의 이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령

보호법

제35조의3(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④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⑤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42조의14(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지정권자는 법 제35조의3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 제42조의12제1항 후단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지정권자(보호위원회는 제외한다)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보호위원회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③ 지정권자(제1호의 경우에는 보호위원회를 제외한다)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보호위원회에 통지
2. 관보에 공고하거나 지정권자의 홈페이지에 게시

2 주요내용 해설

■ 중계전문기관이 중계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중지 또는 폐지 예정일의 6개월 전까지 지정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시행령 제42조의12제7항 전단).

- 정보전송자는 제3자전송요구에 따라 중계전문기관을 통하여 정보를 전송하므로(시행령 제42조의6 제4항), 중계전문기관이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또는 폐지할 경우 중계업무의 공백, 차질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지정권자에게 6개월 전까지 통보하여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중계전문기관으로부터 중계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지정권자는 해당 중계전문기관에게 다음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시행령 제42조의12제7항 후단).

① 해당 중계전문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파기

- 보호법 제21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원칙적으로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계전문기관이 중계업무를 중지 또는 폐지함에 따라 개인정보 전송 내역 등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지정권자는 중계전문기관에게 해당 정보를 파기하도록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시행령 제42조의12제7항제1호).

② 수행 중인 업무의 다른 중계전문기관으로의 이전

- 중계전문기관이 중계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또는 폐지할 경우 중계업무의 공백, 중단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에 지정권자는 해당 중계전문기관이 수행 중인 중계업무와 관련한 사항(개인정보 전송 내역 등)을 다른 중계전문기관으로 이전하도록 조치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 행사가 연속적이고 중단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시행령 제42조의12제7항제2호).

③ 업무의 중지·폐지 예정 사실의 통지

- 지정권자는 중계전문기관에게 업무의 중지 또는 폐지 예정 사실을 ①해당 중계전문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②해당 중계전문기관에 정보를 전송하는 정보전송자, ③해당 중계전문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전송받는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에게 통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시행령 제42조의12제7항제3호).

- 이는 해당 중계전문기관을 통해 정보를 전송하는 이용기관, 정보주체에게 업무의 중지 및 폐지 예정 사실을 통지함으로써 향후 전송 업무를 다른 중계전문기관이 처리하게 하는 등 중계업무 관련 변경 사항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일반전문기관 또는 특수전문기관이 개인정보 전송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미리 중계전문기관에 통지하고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에 등재하여야 한다(시행령 제42조의12제8항).

- 일반전문기관 또는 특수전문기관의 업무가 중지 또는 폐지될 경우 중계전문기관의 중계업무도 함께 중지할 필요가 있어 중계전문기관에 통지하도록 규정하였다.

3 질의 응답

Q1 | 중계전문기관이 다른 중계전문기관으로 업무를 이전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파기해야 하는가?

답변 : 중계전문기관이 다른 중계전문기관으로 업무를 이전하게 되면 중계업무의 처리 목적을 달성한 것이므로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파기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제외됨

Q2 | 중계전문기관이 중계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다른 중계전문기관으로 이전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 : 중계전문기관이 시행령 제42조의6제9항에 따라 관리·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 전송 내역 등 중계업무와 관련한 자료를 다른 중계전문기관으로 이전해야 함

Q3 | 일반·특수전문기관이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중지 또는 폐지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지?

답변 : 일반·특수전문기관 시행령 제42조의12제8항에 따라 중계전문기관에 미리 통지하면 됨
다만, 일반·특수전문기관과 달리 중계전문기관의 경우 중계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 중계업무의 공백, 중단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정권자에게 6개월 전까지 통보하도록 같은 조 제7항에서 규정함

4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취소 절차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지정 이후에도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거나, 지정조건 미이행 등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할 경우 지정권자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가 신뢰 기반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1 법령

보호법

제35조의3(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⑧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42조의12(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⑦ 중계전문기관은 중계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폐지 예정일의 6개월 전까지 지정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해당 중계전문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해당 중계전문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파기(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수행 중인 업무의 다른 중계전문기관으로의 이전
3. 업무 중지 · 폐지 예정 사실의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한 통지
 - 가. 해당 중계전문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 나. 해당 중계전문기관에 정보를 전송하는 정보전송자
 - 다. 해당 중계전문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전송받는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

⑧ 일반전문기관 및 특수전문기관은 개인정보 전송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중계전문기관에 통지하고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에 등재해야 한다.

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13조(지정취소) 지정권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법 제35조의3제4항제2호의 사유 또는 영 제42조의 14제1항의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해당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시정 ·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지정 등의 공고) 지정권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지정, 재지정 또는 지정취소를 한 경우에는 영 제42조의12제6항 및 제42조의1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지정권자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담당 부서 및 연락처
3. 지정 유효기간(지정 또는 재지정의 경우에 한한다)
4. 취소일자 및 취소사유(지정취소의 경우에 한한다)

2 주요내용 해설

- 지정권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 다음 각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보호법 제35조의3제4항, 시행령 제42조의14제1항).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취소 사유 (보호법 제35조의3제4항, 시행령 제42조의14제1항) 〉

구분	지정취소 사유	관련 규정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보호법 제35조의3제4항제1호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보호법 제35조의3제4항제2호
3	지정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행령 제42조의14제1항

- 지정권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보호법 제35조의3제5항).

-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하며(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 지정권자는 처분을 할 때 청문조서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문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35조의2).
 - 지정권자는 청문 결과를 바탕으로 치유 가능한 지정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해당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시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13조).

- 지정권자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와 미리 협의해야 하며, 지정을 취소한 경우 지정취소 사실을 보호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시행령 제42조의14 제2항 및 제3항).

- 또한, 지정권자(보호위원회 포함)는 지정취소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지정권자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하였다(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14조).

* 공고 내용: ①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명칭 및 주소, ②담당 부서 및 연락처, ③취소일자 및 취소사유

3 질의 응답

Q1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지정취소가 되었을 경우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지정취소가 되었을 경우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답변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보호법 제35조의3제4항 및 시행령 제42조의14에 따라 지정취소가 되었을 경우, 수행 중인 업무를 중단하고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파기(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해야 함

중계전문기관의 경우 지정시 부과된 조건에 따라 시행령 제42조의12제7항에 준하여 수행 중인 업무를 다른 중계전문기관으로 이전하는 조치도 하여야 함

또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지정취소시 위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조치한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음

Q2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 지정취소된 경우,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 지정취소되더라도 중계전문기관,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의 업무를 다시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요건 세부기준을 모두 갖추고 지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정권자는 심사결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다시 지정할 수 있음

다만, 지정취소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 다시 지정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전 지정취소 사유 등에 대하여 엄격히 심사하고, 조건부가 등을 통해 보다 엄격히 관리·감독할 예정임

5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금지행위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 지정 이후에도 전송받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정받은 범위 내에서 정보를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금지행위를 구체화하였다.

1 법령

보호법

제35조의3(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③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2. 그 밖에 개인정보를 침해하거나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시행령

제42조의13(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금지행위) 법 제35조의3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별표 1의3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주요내용 해설

가. 중계전문기관 금지행위

■ 중계전문기관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① **중계전문기관 업무 종료 후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1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행위**

- 중계전문기관은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 이는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원칙을 실현하고,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② **제42조의5제5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 철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전송 절차를 중단하지 않는 행위**

- 중계전문기관은 정보주체가 전송 요구를 철회하는 경우 전송요구서 및 접근토큰 등 전송 중계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는 등 전송 중단에 필요한 조치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중계전문기관이 정보주체가 전송 요구를 철회하였음에도 전송 절차를 중단하지 않는 것은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③ **제42조의6제9항에 따라 전송 내역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는 행위**

- 중계전문기관이 전송 내역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을 경우 정보주체가 전송 내역을 확인할 수 없게 되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중계전문기관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전송 내역을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42조의12제7항에 따라 중계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 중지 또는 폐지 예정일의 6개월 전까지 지정권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행위**

- 제3자전송요구는 중계전문기관을 필수적으로 통하게 되므로, 중계전문기관이 사전 통보 없이 중계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또는 폐지할 경우 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 따라서, 지정권자가 최소 6개월 전에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업무의 중지 또는 폐지에 대한 대책이나 후속 조치를 마련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전송 절차 중단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위약금 등 경제적 대가를 요구하거나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해진 수수료의 금액보다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

- 중계전문기관은 정보전송자의 전송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등 중계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수료를 정산받게 된다. 이때 중계전문기관이 정해진 수수료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하거나, 전송 업무와 관련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할 경우 건전한 경쟁 질서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수수료 산정 기준보다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였다.

⑥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중계수수료를 산정하거나 중계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계수수료를 높이는 등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 마이데이터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전송량에 기반해 수수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중계전문기관이 수수료 산정 기준에 따르지 않고 총액을 부풀려 계산하거나, 전송량, 표준 전송비용 등 수수료 산정에 기초가 되는 자료를 조작하여 산정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⑦ **중계전문기관을 이용하려는 정보전송자,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를 거부하거나 이용을 차별하는 행위**

- 제3자전송요구는 중계전문기관을 필수적으로 통하게 되므로, 중계전문기관이 자신과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기관에 대하여 중계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등 특정 대상에 대하여 차별할 수 없도록 하였다.

⑧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와 유사한 행위로서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전송 체계 확립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나. 일반전문기관 금지행위

■ 일반전문기관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①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송 요구 목적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를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을 통해 전송받은 정보를 관리·분석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므로, 이를 벗어나 전송 요구 목적과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를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 또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도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최소 수집 원칙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하므로, 전송 요구 목적과 관련 없는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전송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필수적인 경우가 아닌데도 전송받은 정보에 대한 제3자 제공 동의를 전송 요구와 동시에 받는 행위**

-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필수적이지 않은 제3자 제공 동의를 전송 요구와 동시에 받아 정보주체가 불필요한 동의를 하게 해서는 안 되며, 서비스 운영에 필수적이지 않은 제3자 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도 하여서는 안 된다.

③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전송 요구 목적 달성 이후에도 전송받은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행위**

-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이 달성 되는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반전문기관도 전송받은 정보가 전송 요구의 목적이 달성되는 등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제한하였다.

④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권리에 대한 대리 행사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 일반전문기관이 정보주체에게 전송 요구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해 전송 요구를 하도록 정보주체의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는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전송요구권 행사라는 마이데이터 제도 취지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제한된다.

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42조의5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 내용을 변경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전송 요구 내용을 변경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제한된다.

⑥ **제42조의5제5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송 요구를 즉시 변경·철회하지 않는 행위**

-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전송요구권 행사 여부, 범위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주체가 전송 요구의 변경·철회를 요구할 경우 일반전문기관은 기술적·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의 요구에 즉시 대응해야 한다.
- 개인정보 전송 요구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철회하는 경우 이를 즉시 반영하지 않으면 정보주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인정보가 처리되거나 잘못된 정보가 전송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전문기관은 전송 요구의 변경 또는 철회 요구를 받으면 이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

⑦ 제42조의5제5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 변경 및 철회를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위약금 등 경제적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 보호법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의 권리행사를 보장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전송요구권도 정보주체의 권리에 해당하므로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전송 요구를 변경·철회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전송 요구의 변경 및 철회를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위약금 등 경제적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제약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제한된다.

⑧ 제47조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에 따른 수수료의 지불을 회피하는 행위

-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에 따라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정보전송자는 정보 전송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을 갖추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정보전송자는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정보전송자가 정보 전송에 따른 비용 부담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전송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한 것으로, 수수료의 지불을 회피하는 행위는 전송 체계 확립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금지된다.

⑨ 전송 요구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 보호법상 개인정보 전송 요구는 정보주체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전송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보주체가 정보전송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전송 요구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할 경우, 이는 정보주체의 명확한 권리 행사에 따른 전송 요구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⑩ 자신이 아닌 제3자에게 전송 요구를 하지 않도록 강요·유도하거나 제3자에 대한 전송 요구를 철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인 개인 정보관리 전문기관, 일반수신자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정보를 전송받으려는 정보수신자가 자신 외 다른 정보수신자에게 전송하지 못하도록 권리 행사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다른 정보수신자에게 행사한 전송요구권을 철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제약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제한된다.

⑪ 정보주체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추천 또는 권유하는 행위

- 일반전문기관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관리·분석하여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지원하고,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만일 정보주체에게 적합하지 않은 계약을 추천 또는 권유할 경우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등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제한된다.

⑫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특정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정보주체로부터 전송받은 정보를 관리·분석하는 과정에서 정보수신자의 이익과 정보주체 또는 정보주체 자신 외 다른 정보주체의 이익이 서로 상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수신자가 특정한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등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 행위는 전송 체계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제한된다.

⑬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를 이유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전산설비에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여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

-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를 이유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전산설비에 장애가 발생할 정도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할 경우 시스템 과부하,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다른 정보주체의 정당한 서비스 이용도 방해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제한된다.

⑭ 그 밖에 가목부터 파목까지와 유사한 행위로서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전송 체계 확립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다. 특수전문기관 금지행위

■ 특수전문기관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① 제2호가목부터 파목까지의 행위(일반전문기관 금지행위 ①~⑬)

- 일반전문기관의 금지행위 중 제2호 가목부터 파목까지는 특수전문기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② 금전적 이익 등을 조건으로 정보주체의 전송 동의를 유도하는 행위

- 정보주체가 금전적 이익을 제공받을 목적이 아닌 자신의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금전적 이익 등 편익 제공에 의한 전송 요구 유도 행위는 제한된다.

③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이증자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 등을 차별하는 행위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서는 정신질환자, 장애인, 장기등기증자,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 등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전송정보를 활용하는 특수전문기관도 관련 법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명시하였다.

④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2항 및 제50조에 따라 금지 및 제한된 행위

- 유전정보를 이유로 교육·고용·승진·보험 등 사회활동에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도록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보건의료전송정보를 활용하는 특수전문기관도 관련 법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명시하였다.

⑤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유사한 행위로서 정보주체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전송 체계 확립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제46조(유전정보에 의한 차별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유전정보를 이유로 교육·고용·승진·보험 등 사회활동에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타인에게 유전자검사를 받도록 강요하거나 유전자검사의 결과를 제출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유전자검사의 제한 등) ① 누구든지 과학적 증거가 불확실하여 검사대상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신체 외관이나 성격에 관한 유전자검사 또는 그 밖에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전자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유전자검사기관은 근이영양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전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에서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한 경우에는 질병의 예방, 진단 및 치료와 관련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없다.

1.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은 경우
2. 질병의 예방과 관련된 유전자검사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누구든지 유전자검사에 관하여 거짓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거짓표시 또는 과대광고의 판정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질의 응답

Q1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금지행위 위반 시 제재는?

답변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 보호법 제35조의3제3항 및 시행령 제42조의13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보호법 제75조 제2항 제21호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 전송받은 정보를 제3자에게 가명처리하여 유상 판매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답변 : 전송받은 정보 관련 가명정보의 처리는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의 절차를 따르며, 해당 가이드라인에서는 가명정보를 과학적 연구 등 보호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로 제공하면서 대가를 받는 것은 금지하고 있지는 않음

다만, 가명정보 제공 대상이나 가명처리 목적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명처리하는 것과 추후 그 가명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판매가 목적으로 볼 수 있어 허용 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함

※ 보건의료전송정보의 경우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등을 고려하여야 함

Q3 |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은 개인정보 전송 요구를 통해 전송받은 정보(전송정보)를 제3자 제공할 수 있는지?

답변 : 정보주체로부터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다만, 정보수신자(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등)는 전송받은 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내역을 시행령 제42조의16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온마이데이터, onmydata.go.kr)에 제출하여야 함

특히,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필수적인 경우가 아님에도 전송받은 정보에 대한 제3자 제공 동의를 전송 요구와 동시에 받지 않도록 시행령 제42조의13에서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의 금지행위로 제한하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IV

개인정보 전송 관리 및 지원 (보호법 제35조의4)

IV 개인정보 전송 관리 및 지원 (보호법 제35조의4)

1 보호위원회의 관리·감독

- 보호위원회는 안전한 전 분야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 및 마이데이터 제도에 대한 정보주체의 신뢰 확보를 위해 정보전송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이하 '참여기관')의 현황 및 실태의 확인, 관리·감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수집·이용, 목적 외 이용 등과 관련한 처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법령

보호법

제35조의4(개인정보 전송 관리 및 지원) ① 보호위원회는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및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현황, 활용내역 및 관리실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42조의15(개인정보 전송 요구에 대한 보호위원회의 관리·감독)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라 정보전송자 현황을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정보전송자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보호위원회는 본인전송요구 및 제3자전송요구에 대한 정보전송자의 이행 여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일반수신자의 시설·기술 기준 충족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정보전송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1. 정보전송자: 제42조의6제9항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 내역에 관한 자료

2.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제1호의 자료

나. 개인정보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자료

다. 전송 요구 방법에 관한 자료(일반전문기관 및 특수전문기관에 한정한다)

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일반수신자: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제1호 및 제2호나목의 자료

나. 전송 요구 방법에 관한 자료

다.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주요내용 해설

가. 자료 제출 관련 사항

- 보호위원회는 정보전송자 현황을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정보전송자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시행령 제42조의15제1항).
- 또한, 보호위원회는 본인전송요구 및 제3자전송요구에 대한 정보전송자의 이행 여부,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일반수신자의 시설·기술 기준 충족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해야 한다(시행령 제42조의15제2항).
- 이를 위해 보호위원회는 각 참여기관에게 다음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시행령 제42조의15제2항).

〈 참여기관별 자료제출 사항 (시행령 제42조의15) 〉

번호	구 분	세부 사항
1	정보전송자	제42조의6제9항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 내역에 관한 자료
2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 제42조의6제9항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 내역에 관한 자료 - 개인정보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자료 - 전송 요구 방법에 관한 자료(일반전문기관 및 특수전문기관에 한정한다)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일반수신자	- 제42조의6제9항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 내역에 관한 자료 - 개인정보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자료 - 전송 요구 방법에 관한 자료 -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나. 전송 요구 관련 관리·감독 및 제재 사항

- 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 행사에 따라 정보를 전송하는 정보전송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 등은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므로, 보호법상의 일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① 정보전송자

- 정보전송자가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에 따른 정보를 전송하지 않는 경우 보호위원회는 보호법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미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② 정보수신자

- 정보수신자인 일반수신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도 정보주체로부터 전송받은 정보를 업무 목적으로 처리하므로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보수신자도 개인정보처리자에 적용되는 안전조치의무 등을 모두 준수하여야 하며, 정보수신자로서 개인정보 처리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도 추가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 예를 들어, 전송받은 정보를 전송 요구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보호법 제18조 위반에 따른 제재 조치가 가능하다(보호법 제64조의2제1항제1호, 보호법 제71조제2호).
 - 또한, 정보수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보호법 제75조제2항제19호 및 제22호).
- 특히, 정보수신자가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과징금,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또한, 보호위원회는 일반수신자가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 등재를 해제하여 정보 수신을 제한할 수 있고,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보호체계 등 지정요건 세부 기준을 갖췄는지를 확인하여 그렇지 못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개인정보를 침해하거나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시행령에 규정된 금지행위(시행령 제42조의13, 별표 1의3)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보호법 제75조제2항제21호).
 - 예를들어 일반전문기관 및 특수전문기관이 전송 요구의 목적 달성 이후에도 전송받은 정보를 보관하거나, 중계전문기관이 중계업무 종료 이후에도 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금지행위(시행령 제42조의13, 별표 1의3) 위반으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보호법 제21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파기 규정 위반에도 해당한다(보호법 제21조 및 제75조제2항제4호).
- 또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지 않고 개인정보 전송시스템의 구축 및 표준화 등의 업무(보호법 제35조의3제1항제2호)를 하는 경우에도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보호법 제75조제2항제20호).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관련 보호법상 주요 제재 사항(예시) 〉

구 분	위반행위	제재 사항
전문기관 업무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지정취소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금지행위 위반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을 받지 않고 전송시스템 구축 및 표준화 등 전문기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수수료 지불 회피, 과도한 전송 요구 등 전송 체계 확립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금지행위 위반)
개인정보의 처리	• 전송 요구 관련 사항 위반	시정조치 명령 후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보호법 제18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적절한 처리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 및 제3자 제공한 경우(보호법 제18조)	전체 매출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음에도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경우(보호법 제21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일반·특수전문기관은 전송 요구 목적 달성 이후에도 전송받은 개인정보를 보관하거나, 중계전문기관이 중계업무 종료에도 파기하지 않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금지행위 위반)
개인정보 유출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보호법 제29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된 경우(보호법 제29조)	전체 매출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거나 보호위원회 등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보호법 제34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정보주체 권리 보장	•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에 응하지 않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질의 응답

Q1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 보호법 위반 시 제재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 시행령 제42조의13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경우(보호법 제75조제2항제21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지 않고 전송시스템 구축 및 표준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보호법 제75조제2항제20호)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그 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도 전송받은 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보호법 일반 규정에 따라 수집·이용, 목적 외 이용, 파기,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가 가능함

Q2 | 제3자전송요구와 관련하여 중계전문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인 전송 내역 등을 정보전송자도 자료 제출하여야 하는지?

답변 : 보호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제3자전송요구에 따라 정보를 전송하는 정보전송자 및 중계전문기관 모두 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 행사에 따른 수범자에 해당하므로, 보호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 각각 직접 제출할 의무가 있음

또한, 전송 내역 등의 자료는 정보주체의 민원 대응, 전송 실태 조사, 수수료 산정 과정에서 오류 점검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로, 정보전송자와 정보수신자 각각으로부터 자료를 모두 제출 받아 확인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각각 수범자로부터 직접 자료를 제출받을 필요가 있음

2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

-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온마이데이터, onmydata.go.kr)⁴⁾은 정보주체의 전송 이력 확인, 전송 중단, 전송 내역의 파기, 전송 요구의 철회 등 권리 행사를 지원한다.
- 기업·기관 등 참여기관은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발부터 테스트까지 자유롭게 시험해 볼 수 있고, 지정 신청부터 변경까지 모든 절차를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1 법령

보호법

제35조의4(개인정보 전송 관리 및 지원)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전송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1.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현황 및 전송 가능한 개인정보 항목 목록
2.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 요구·철회 내역
3. 개인정보의 전송 이력 관리 등 지원 기능
4. 그 밖에 개인정보 전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지원 플랫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서 구축·운영하고 있는 전송 시스템을 상호 연계하거나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감독과 개인정보 전송지원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42조의12(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⑧ 일반전문기관 및 특수전문기관은 개인정보 전송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중계전문기관에 통지하고 개인정보 전송지원플랫폼에 등재해야 한다.

제42조의16(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보호위원회는 제3자전송요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전송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및 일반

4) 온마이데이터(onmydata.go.kr): 모든 마이데이터가 연결된다는 뜻과 온라인을 결합된다는 의미로, '온'은 3가지 중의적 표현 (①'모든(한글)'은 범정부, ②'따뜻하다(한자)'는 국민의 데이터를 따뜻하고 안전하게 지원, ③'커다on(영어)'은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란 의미)

수신자가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에 등재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에 등재된 정보전송자,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는 제3자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송하거나 전송받는 경우 중계전문기관을 통하여 개인정보전송플랫폼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제42조의6제9항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 내역

2. 전송받은 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내역(정보전송자는 제외한다)

③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전송 이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전송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자에게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과 연계하여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 내역 등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15조(일반수신자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 등재 절차) ① 영 제42조의16제1항에 따라 일반수신자로서 정보를 전송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일반수신자 등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개인정보 전송 지원 플랫폼(이하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이라 한다)에 등재를 신청해야 한다.

1. 개인정보 관리 계획서(고유의 업무 수행에 있어 전송받고자 하는 정보의 필요성 및 이용계획을 포함한다)

2.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별표 1에 따른 일반수신자 시설 및 기술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여 법 제3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일반수신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수신자를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에 등재해야 한다.

제16조(전문기관 등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 등재 절차) ① 보호위원회는 지정권자가 제9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에 등재해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영 제42조의15제1항에 따라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전송자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전송자를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에 등재해야 한다.

2 주요내용 해설

가. 주요 기능

■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안정적 및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가 구축한 채널로 ①전송 이력 관리, ②전송 요구의 철회, ③참여기관 관리 및 정보 배포, ④전송 요구의 관리 지원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 정보주체는 정보전송자 현황, 정보수신자인 일반전문기관 및 특수전문기관의 현황,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 항목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기업·기관 등 참여기관은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에 등재되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지원을 위한 자격증명을 발급받고 참여기관 간 연계하는 등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의 주요 기능 〉

구 분	주요 기능	세부 내용
정보 주체	제도 안내	• 마이데이터 제도 안내 • 마이데이터 서비스 목록 조회
	전송 이력 관리	• 전송 요구 내역, 전송 내역 조회 • 제3자 제공 동의 내역 조회
	전송 요구의 철회	• 전송 요구 철회 요청 및 철회 내역 조회
참여기관	참여기관 관리 및 정보 배포	• 정보전송자, 정보수신자, 중계전문기관의 등재·승인 및 자격증명 발급 • 전송요구대상정보 및 표준 API 목록 제공
	전송 요구의 관리 지원	•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 철회 요청에 따른 처리 • 중계전문기관으로부터 전송 내역 및 제3자 제공 동의 내역 수신

〈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 역할 및 기능 등 〉



나. 정보주체의 전송 내역 등의 조회

■ 정보수신자와 정보전송자 간 전송 내역은 중계전문기관을 통해 기록·보관된다. 따라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을 통해 전송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에서 전송 내역의 조회를 요청하면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은 중계전문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전송 내역을 조회하고, 정보주체가 전송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회 결과를 제공한다.

■ 또한, 보호위원회는 타 법령(신용정보법,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개인정보 전송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자에게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과 연계하여 전송 요구 내역 등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시행령 제42조의16제3항). 이를 통해 정보주체가 전 분야의 개인정보 전송 내역 등을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에서 한 번에 조회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정보수신자는 전송 요구를 통해 전송받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전송 요구서를 처리한 중계전문기관에게 제3자 제공 동의 내역을 전송해야 한다.

- 정보주체가 제3자 제공 동의 내역의 조회를 요청하면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은 중계전문기관으로부터 상세 내역을 제공받아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 이러한 절차를 통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에서 전송요구서별로 제3자 제공 동의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다. 참여기관 등재

■ 보호위원회는 제3자전송요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기관을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에 등재해야 한다(시행령 제42조의16제1항, 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15조 및 제16조).

① 정보전송자의 등재

- 정보주체가 전송 요구를 지원할 수 있는 정보전송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전송자에 대한 정보를 개인정보지원플랫폼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이에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전송자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전송자를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에 등재해야 한다(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16조제2항).

② 일반수신자의 등재

- 일반수신자가 일반수신자 등재신청서에 ㉠개인정보 관리 계획서,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 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전문기관 지정 고시 별표 1에 따른 일반수신자 시설 및 기술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을 통해 제출하면 보호위원회는 등재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보호법 제3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일반수신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수신자를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에 등재해야 한다(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15조).
- 보호위원회는 일반수신자에게 시행령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을 갖추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등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또한, 보호위원회는 일반수신자의 등재신청서 및 관련 서류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등재

- 보호위원회는 지정권자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 해당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에 등재해야 한다(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16조제1항).
- 한편, 일반전문기관 및 특수전문기관은 개인정보 전송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미리 중계전문기관에 통지하고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에 등재하여야 한다(시행령 제42조의12제8항).

라. 참여기관의 지원

-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의 개발시험 지원센터를 통해 전송 요구 규격 및 정보 전송 규격 등을 확인하고 연계 기능 등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시험환경을 이용할 수 있다.
- 또한, 정보전송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등 참여기관별 유형에 맞는 신청서류를 개인정보전송 지원플랫폼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 신청에서 변경승인 등 모든 절차를 한 번에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마. 자료 제출

-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에 등재된 정보전송자,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는 제3자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송하거나 전송받는 경우 중계전문기관을 통하여 개인정보 전송지원플랫폼에 개인정보 전송 내역 및 전송받은 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내역(정보전송자는 제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시행령 제42조의16제2항).

〈 전송 이력의 범위 (시행령 제42조의16제2항) 〉

구 분		세부 항목
전송 이력	개인정보 전송 내역 (시행령 제42조의6제9항)	• 전송 요구 사항 (전송 요구 목적, 전송 요구를 받는 자 등) • 정보 송 · 수신 기록 • 전송 요구의 철회 • 전송 요구의 거절 • 전송 중단 내역 및 사유
	전송받은 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내역	

3 질의 응답

Q1 |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에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어떤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지?

답변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온마이데이터, onmydata.go.kr)에서 현재 마이데이터 서비스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전송 요구 내역을 확인하여 필요 시 전송 요구를 철회할 수 있음

Q2 | 참여기관은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 정보전송자,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등 참여기관별 유형에 맞는 신청서류를 확인하고 등록할 수 있으며, 지정 신청에서 변경승인 등 모든 절차를 원스톱 지원받을 수 있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시험환경을 통해, 전송 요구 및 정보 전송 규격 등을 쉽게 확인하고 연계 테스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



전송 요구 관련 수수료

V 전송 요구 관련 수수료

- 보호위원회는 전송요구대상정보의 특성, 필요한 설비의 구축·운영 비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의 수수료를 산정하고, 정보전송자가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법령

보호법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를 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35조의2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의 경우에는 전송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설비 등을 함께 고려하여 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다.

시행령

제47조(수수료 등의 금액 등)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와 우송료의 금액은 열람등요구에 필요한 설비의 범위에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고, 법 제3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는 전송요구 대상정보의 특성 및 필요 설비의 구축·운영 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②~③ (생략)

④ 정보전송자는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가 제42조의5제3항 전단에 따라 정보주체를 대신하여 제3자전송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에게 법 제3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2 주요내용 해설

-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가 정보주체를 대신하여 제3자전송요구를 하는 경우, 정보전송자는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시행령 제47조제4항).
- 이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정보전송자가 전송 의무를 이행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부담을 완화하고,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 것이다.
- 전송 요구에 대한 수수료는 전송요구대상정보의 특성 및 필요한 설비의 구축·운영 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 기준(추후 제정 예정)에 따라 산정할 예정이다 (시행령 제47조제1항).

3 질의 응답

Q1 | 과금 체계는 어떤 방식으로 마련할 계획인지?

답변 : 선행 비용분담체계 분석과 필요한 설비의 구축 원가, 중계비용, 데이터 생성·처리 기여도 등 비용분담체계에서 고려할 요소를 파악하고, 분야별 시장 현황 분석 등을 거쳐 원칙 위주의 수수료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며, 제도 시행 이후 과금협의체를 운영하여 참여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Q2 |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 요구에 대한 수수료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답변 : 비용분담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25년)를 수행하여 과금 기준을 마련 및 검증하고, 법령 정비 필요 사항을 검토할 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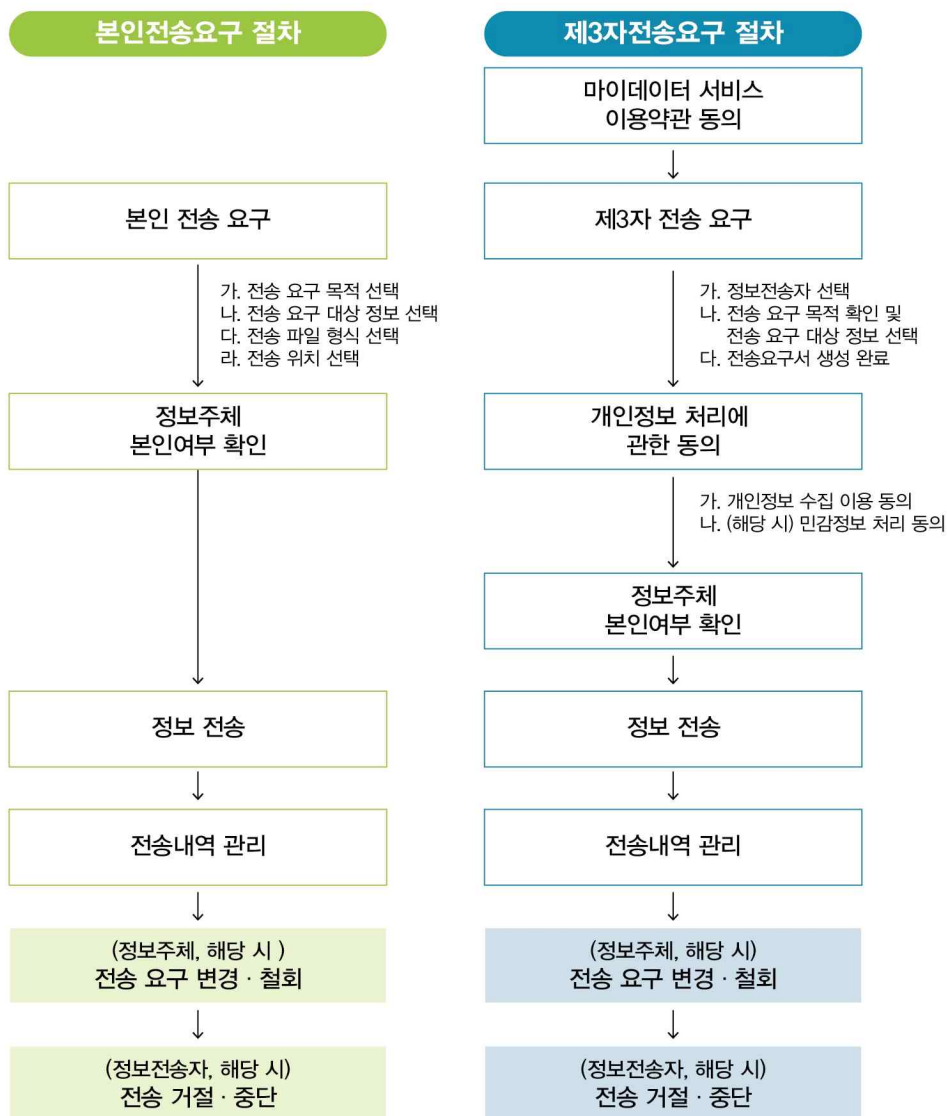
또한 참여기관 등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 운영,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전송 요구에 대한 합리적인 수수료 기준을 연내 마련할 계획임

부록

1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 및 이행 절차

- 본 내용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와 정보전송자 및 정보수신자의 본인전송요구와 제3자 전송요구 이행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작성하였다.

※ 본 내용은 예시이며, 아래 절차를 참고하여 정보전송자가 자율적으로 구성 가능



1 본인전송요구 절차

■ 정보전송자는 시행령 제42조의6제5항에 따라 정보주체가 본인전송요구, 전송 현황 및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마련하고, 그 방법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합니다. 본인전송요구 절차 및 화면 예시는 아래와 같다.

1) 본인전송요구

① 전송 요구 목적 선택

- 정보전송자는 정보주체가 본인전송요구권을 행사하는 때에는 시행령 제42조의5제1항에 따라 전송요구 목적을 특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정보전송자는 서비스 특성과 정보주체의 실질적 수요를 고려하여 전송 목적의 범주나 유형을 자체적으로 정하거나 정보주체가 직접 목적을 작성하게 하는 등 해당 기능을 탄력적으로 구성하여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전송요구대상정보 선택

- 정보전송자는 정보주체가 본인전송요구권을 행사하는 때에는 시행령 제42조의5제1항에 따라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를 특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정보전송자는 정보주체가 보호법령에서 정한 전송요구대상정보와 자율전송정보(정보전송자가 자율적으로 정한 정보)를 전송 요구할 수 있도록 보호법령에서 정한 정보의 범위, 서비스의 특성과 실질적 수요 등을 고려하여 이용약관에 따른 기존 조회 서비스 기능 등을 활용하여 전송요구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 항목을 자체적으로 정하거나 정보주체가 열거된 항목 중 필요로 하는 항목을 선택하게 할 수 있다.

③ 전송 파일 형식 선택

- 정보전송자는 정보주체 본인에게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보호법 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 가능한 형태로 전송하여야 한다.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는 컴퓨터와 같이 자동으로 계산이나 자료처리를 하는 전자장치를 뜻하는 것으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모두 포함하며, 네트워크 시스템에서의 단말장치를 포함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 가능한 형태는 정보주체가 컴퓨터 등에서 편집이 가능한 파일 형식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PDF, XLS, CSV, HTML, JSON 등이 있다.

※ PDF 형식은 정보 확인의 편의성은 있으나 관리·편집이 제한될 수 있어, XLS, CSV, HTML 등 처리에 용이한 형식으로 제공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데이터 활용을 지원할 수 있음

④ 전송 위치 선택

- 정보전송자가 정보주체 본인에게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정보주체 본인만이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정보를 전송하여야 한다.

- 본인만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은 정보주체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 계정 등 정보주체가 배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매체를 의미한다.

* 이동통신단말장치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이용자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의미하며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이 이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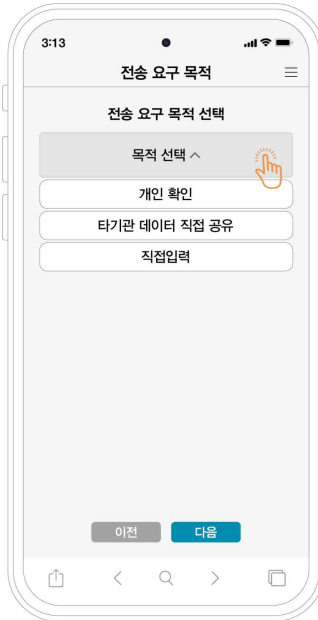
- 정보주체의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입력한 전자우편 주소가 정보주체 본인의 계정으로 확인되지 않을 시에는 주소에 대한 사전 확인 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 본인전송요구 절차 화면 예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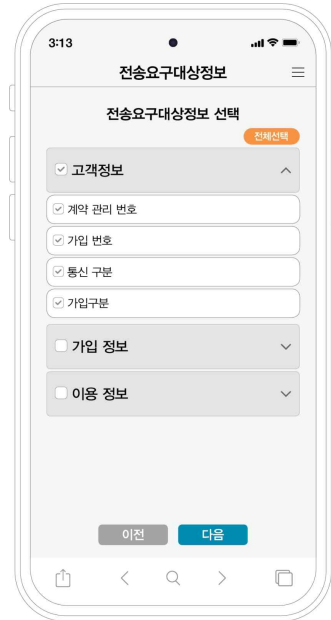
① 본인전송요구 시작



② 전송 요구 목적 선택



③ 전송요구대상정보 선택



④ 전송 파일 형식 선택



⑤ 전송 위치 선택



⑥ 본인전송요구 완료



2) 정보주체 본인여부 확인

- 정보전송자는 정보주체로부터 전송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정보전송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환경 및 보호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인증 수단*을 개별 또는 복수로 제공할 수 있다.

* ① 로그인 ID/PW : 서비스 가입 당시 기재한 ID/PW 기반 인증 방식

② 공동 및 금융 인증서 : 전자서명과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높은 보안 수준을 제공하고, 금융 거래에서 이용하는 방식

③ 소셜 로그인 : 포털,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로그인 연동을 통하여, 회원가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보주체가 SNS 가입 당시의 제공한 개인정보를 타 서비스에 제공하여 로그인하는 방식

④ 생체 인증 : 지문, 얼굴 인증 등을 활용하여 인증하는 방식

- 다만, 최근 크리덴셜 스테핑(Credential Stuffing)* 공격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정보주체 본인확인을 위한 추가적 인증수단 적용, 캡차(CAPTCHA) 적용, 로그인 실패에 대한 임계치 설정 등의 조치를 통해 크리덴셜 스테핑 또는 자동화된 봇을 통한 접근 시도 등으로 정보가 유출 및 오전송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공격자가 다크웹 등에 유출된 이용자 계정 정보(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자동화된 도구를 사용해 여러 웹사이트나 서비스에 무차별적으로 로그인(인증)을 시도하는 공격

〈 정보주체 본인여부 확인 방식 예시 〉



3) 정보 전송

- 정보전송자는 본인전송요구의 경우 시행령 제42조의6제3항제1호에 따라 ‘정보 전송 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암호화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전송하여야 한다.
 - 정보전송자는 정보주체가 요구한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경우 웹서버에 SSL/TLS (Secure Socket Layer/Transport Layer Security)*와 같은 암호화 기반 인터넷 보안 프로토콜을 활용하거나 웹서버에 암호화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 웹브라우저와 웹서버 간 데이터를 안전하게 주고받기 위해 암호화 기술이 적용된 보안 프로토콜
- 정보전송자는 정보주체에게 민감정보 등을 전송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안전성을 위해 정보주체가 설정한 비밀번호로 정보를 암호화하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보안을 강화할 수 있다.
- 또한, 정보전송자는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와 시행령 제42조의6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 유지 의무를 함께 고려하여 정보를 전송하여야 한다.
- 정보전송자는 정보주체의 ①개인단말기기, ②전자우편 등 정보주체가 선택한 전송 위치에 따라 전송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 본인전송요구에 따른 정보 전송 화면 예시 〉



4) 전송 내역 관리

- 정보전송자는 시행령 제42조의6제5항에 따라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전송 현황 및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42조의6제9항에 따라 전송 내역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전송 현황’이란, 전송 요구의 현재 상태를 의미하며, 정보전송자는 정보주체가 전송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전송 현황 관리 예시 〉

- ① ‘처리 중’ : 개인정보 전송 요구에 따른 전송을 처리하는 상태
- ② ‘전송 완료’ : 정보주체로 정보 전송이 모두 완료된 상태
- ③ ‘철회’ :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전송 요구가 철회된 상태
- ④ ‘거절/중단’ : 정보전송자로부터 개인정보 전송이 거절되거나 중단된 상태

- ‘전송 내역’이란, 시행령 제42조의6제9항에 따라 정보주체가 특정한 전송 요구 목적 및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정보주체가 실제로 전송받은 시간 등 정보의 송·수신 기록과 전송 요구의 철회·거절·중단 내역 및 사유에 대한 정보를 의미한다.

〈 전송 현황 및 내역 화면 예시 〉



5)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 변경·철회

- 정보주체는 보호법 제35조의2제5항, 시행령 제42조의5제5항에 따라 자신의 전송 요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예를 들어 정보주체가 정보전송자에게 본인전송요구를 하였는데 ‘처리 중’인 상태라면 정보전송자는 정보주체가 전송 요구 변경 및 철회를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정보전송자는 시행령 제42조의5제5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본인전송요구 철회를 전송 요구할 당시의 방법과 절차보다 어렵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예를 들어 정보주체가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송을 요구하였다면 동일한 플랫폼에서 동일한 방법과 절차로 기존 전송 요구를 변경·철회할 수 있어야 한다.
 - 특히, 변경·철회 과정에서 불필요한 확인 절차나 반복적인 의사 확인을 통해 정보주체의 변경·철회 행사를 방해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
- 정보전송자는 시행령 제42조의6제9항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 철회가 완료되면 해당 전송 요구 철회의 내역 및 사유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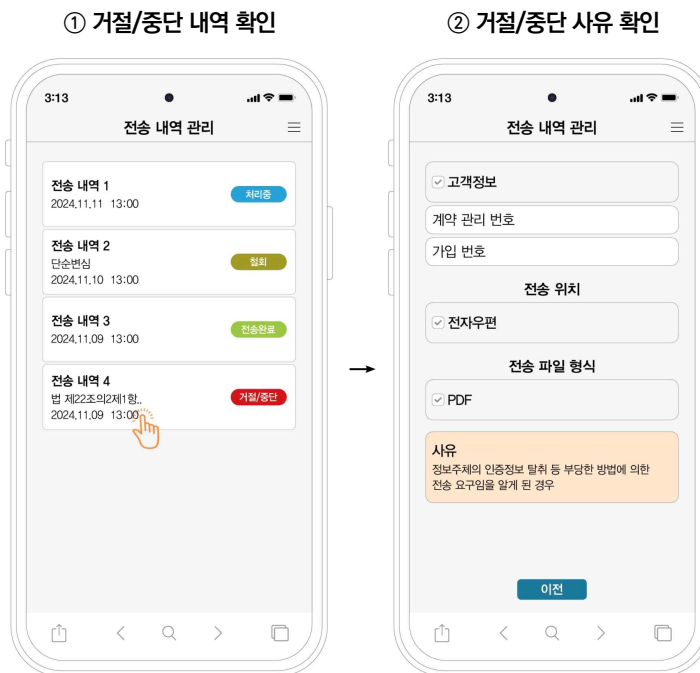
〈 정보주체의 본인전송요구 철회 절차 시연 화면 예시 〉



6) 정보전송자의 전송 요구 거절·중단

- 정보전송자는 보호법 제35조의2제6항, 시행령 제42조의8에 따라 특정 상황에서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정보전송자는 시행령 제42조의8제1항의 각 호의 사유로 정보주체의 본인전송요구를 거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실 및 그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 본인전송요구 거절/중단 내역 확인 화면 예시 〉



2 제3자전송요구 절차

■ 시행령 제42조의5제3항에 따라 정보주체는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등 정보수신자를 통하여 정보전송자에게 제3자전송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전송요구서 생성, 정보주체 본인 여부 확인 등 제3자전송요구 절차 및 예시를 아래와 같다.

※ 기술적인 자세한 사항은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전송 절차 및 기술 가이드라인」 참고

1)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약관 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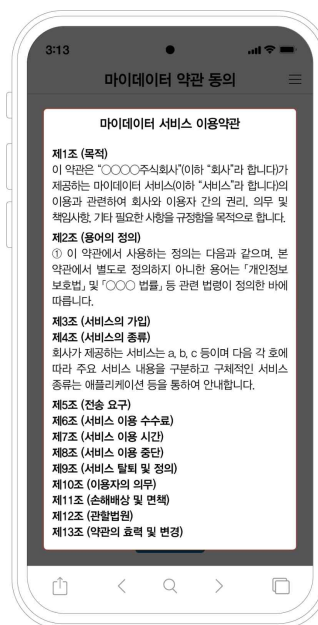
- 정보수신자는 정보주체가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을 확인하고 동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이는 전송받은 정보를 통해 정보주체에 대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동의받는 절차에 해당한다.
 - 정보주체가 약관 내용을 알기 쉽도록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매체에서도 정보주체가 정보 활용 동의 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약관 동의 화면 예시 〉

① 마이데이터 서비스 약관 동의



② 약관 동의서



2) 제3자전송요구

- 정보수신자는 정보주체가 제3자전송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42조의5제2항제2호에 따라 개인 정보 전송요구서 서식에 맞춰 다음의 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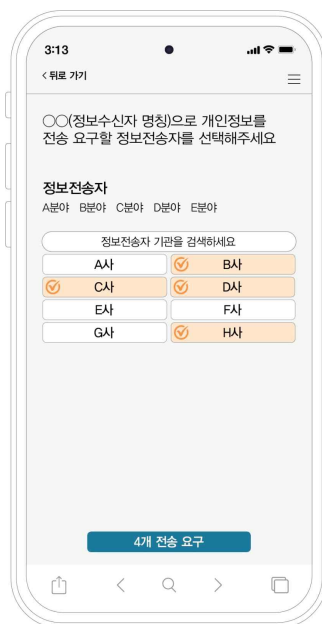
〈제3자전송요구서 특정 사항〉

- ① 전송 요구 목적
- ② 전송 요구를 받는 자(정보전송자)
- ③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자(정보수신자)
- ④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전송요구대상정보)
- ⑤ 정기적 전송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
* 일반전문기관 또는 특수전문기관에 대한 제3자전송요구를 하는 경우에 한정
- ⑥ 전송 요구의 종료시점
- ⑦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① 정보전송자 선택

- 정보수신자는 정보주체가 제3자전송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42조의5제2항제2호에 따라 전송 요구를 받는 자를 특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예를 들어 정보주체에게 정보전송자 목록을 제시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전송해 줄 것을 희망하는 정보전송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는 방법이 있다.

〈 정보전송자 선택 화면 예시 〉



② 전송 요구 목적 확인 및 전송요구대상정보 등 선택

- 정보수신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또는 일반수신자 등제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서비스 목적 범위 내에서 전송 요구 목적과 목적에 필요한 전송요구대상정보 및 보유기간 등 전송요구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한다.
- 이때, 정보주체가 일반전문기관 및 특수전문기관에 대한 제3자전송요구를 하는 경우 시행령 제42조의5 제4항에 따라 정기적 전송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일반전문기관 및 특수전문기관은 정기적 전송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그 주기에 대하여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해야 한다.

〈전송 요구 목적 및 전송요구대상정보 등 작성 화면 예시〉

① [의료] 전송 요구 목적 및 전송요구대상정보 선택



② [통신] 전송 요구 목적 및 전송요구대상정보 선택



③ 그밖에 전송요구 관련 사항 선택



③ 전송요구서 생성 완료

- 정보수신자는 시행령 제42조의5제3항에 따라 정보주체가 전송 요구 특정 사항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제3자전송요구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야 한다.
 - 이를 위해 정보수신자는 정보주체가 선택한 내용에 따라 전송요구서를 생성하고 전송 요구 완료 전 정보주체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해야 한다.
 - 특히 진단정보, 수술 및 처치 내역 등 민감정보가 포함된 항목에 대한 전송 요구를 할 경우에는, 민감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폰트의 색, 굵기를 달리하거나 알림 문구를 제공하는 화면(예: 체크박스 등)을 적용해야 한다.

〈개인정보 전송요구서 확인 화면 예시〉

① (일반) 전송요구서 확인

3:13 < 뒤로 가기 > ☰

입력하신 내용이 맞는지
전송요구서를 확인해주세요.

전송 요구 목적	☐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전송 요구를 받는 자 (정보전송자)	B사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자 (정보수신자)	A사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가입정보, 이용정보
정기적 전송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그 주기	정기적 전송/주1회
전송 요구의 종료시점	2025. 12. 15까지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월(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최소기간)

변경하기 확인

② (민감정보 포함시) 전송요구서 확인

3:13 < 뒤로 가기 > ☰

입력하신 내용이 맞는지
전송요구서를 확인해주세요.

전송 요구 목적	☐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전송 요구를 받는 자 (정보전송자)	B사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자 (정보수신자)	A사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환자정보, 진단정보
정기적 전송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그 주기	정기적 전송/주1회
전송 요구의 종료시점	2025. 12. 15까지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월(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최소기간)

※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에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확인



3:13 < 뒤로 가기 > ☰

입력하신 내용이 맞는지
전송요구서를 확인해주세요.

전송 요구 목적	☐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
전송 요구를 받는 자 (정보전송자)	B사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자 (정보수신자)	A사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환자정보, 진단정보
정기적 전송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그 주기	정기적 전송/주1회
전송 요구의 종료시점	2025. 12. 15까지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월(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최소기간)

※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에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확인

3)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정보수신자는 보호법 제15조 및 제23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전송요구권을 통해 전송받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시 알려야 하는 사항을 모두 알리고 동의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구현해야 한다.
- 이때 전송요구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과 목적이 서로 중복되고 유사하므로 정보주체에게 각 항목이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범위에서 해당 두 가지의 양식을 통합해 제공하고 동의 받는 것도 가능하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화면 예시〉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3:13 < 뒤로 가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가 필요해요.

수집·이용 목적
○○서비스 제공

수집·이용 항목
가입정보, 이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서비스 이용 종료 시까지

거부할 권리와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미동의 동의

② (통합) 전송요구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3:13 < 뒤로 가기

개인정보 전송요구서를 확인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해주세요.

전송 요구 목적 (수집·이용 목적)	○○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전송 요구를 받는 자 (정보전송자)	B사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자 (정보수신자)	A사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수집·이용 항목)	가입정보, 이용정보
정기적 전송 여부 및 주기	정기적 전송/주1회
전송 요구의 종료시점	2025. 12. 15까지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서비스 이용 종료 시까지
거부할 권리와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미동의 동의

② [해당 시] 민감정보 처리 별도 동의

- 정보수신자는 보호법 제23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전송요구권을 통해 전송받는 민감정보에 대하여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시 알려야 하는 사항을 모두 알리고 별도로 동의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구현해야 한다.
 - 민감정보란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및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의미한다. 이 중 건강에 관한 정보란 개인의 과거 및 현재의 병력, 신체적·정신적 장애(장애등급 유무 등)를 말한다.
 - 특히 보건의료전송정보의 경우 민감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정보주체로부터 민감정보 처리에 관한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민감정보 처리 별도 수집·이용 동의 화면 예시〉



4) 정보주체 본인 여부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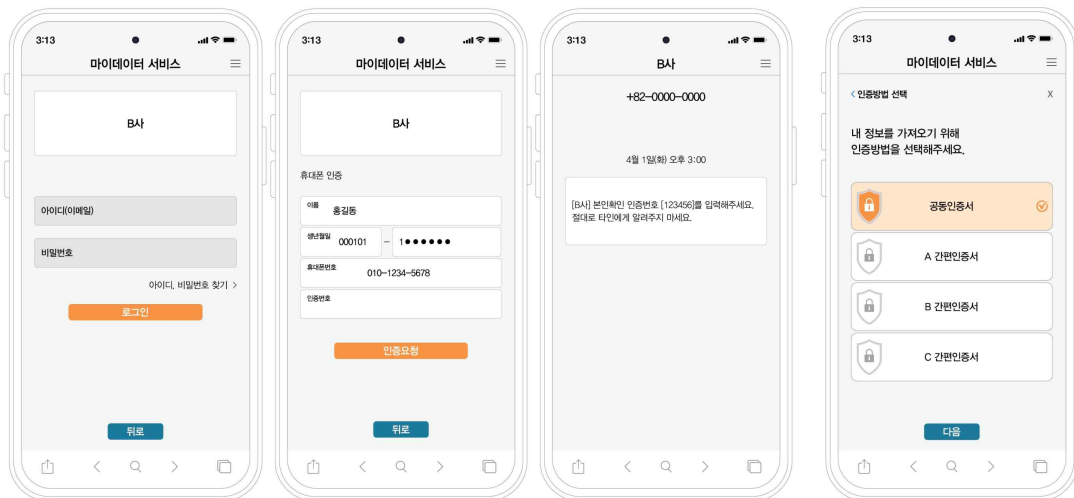
- 정보전송자와 정보수신자는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정보전송자와 정보수신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환경 및 보호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인증 수단을 개별 또는 복수로 제공할 수 있다.
 - ① (개별식별자 기반 인증방식) 정보전송자가 정보주체에게 개별인증수단 인증 화면을 제공하고, 정보주체가 선택한 인증정보 입력 방식(ID/PW, 소셜로그인, PIN번호 등)으로 본인 확인하는 방식이다.
 - ② (인증서 기반 인증방식) 정보수신자가 정보주체로부터 확인받은 전자서명을 사용하여 인증기관 등을 통해 본인 확인하는 방식이다.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서 등 전자서명과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는 방식
 - ③ (연계정보 기반 인증방식) 정보수신자와 정보전송자가 정보주체의 연계정보를 보유함으로써 본인 확인하는 방식이다.
- 다만, 최근 크리덴셜 스테핑(Credential Stuffing) 공격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특히 민감정보 등을 전송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안전성을 위해 정보주체 확인 시 추가적인 인증수단 등 안전한 본인 확인 방식 적용이 권장된다.

〈 정보전송자 및 정보수신자간 정보주체 본인여부 확인 화면 예시〉

① 개별식별자 기반 인증(ID/PW, 휴대폰 인증)

② 인증서 기반 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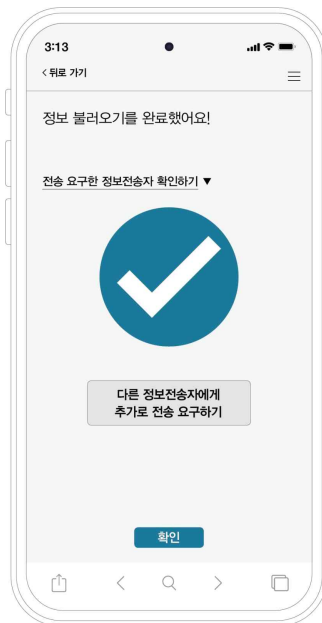
5) 정보 전송

- 정보전송자는 제3자전송요구에 따른 전송을 하는 경우 시행령 제42조의6제3항*에 따라 전송의 안정성 및 신뢰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 정보 전송 시 안전한 알고리즘으로 암호화 전송하는 방식, 정보전송자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일반수신자 사이에 미리 정한 방식, 상호 간 식별·인증할 수 있는 방식 그리고 상호 확인할 수 있는 방식

- 정보전송자는 시행령 제42조의6제4항에 따라 중계전문기관을 통하여 전송해야 하므로 사전에 중계 전문기관 등과 연계하여 전송 의무 이행을 위한 체계를 갖춰야 한다.
- 또한, 정보전송자는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와 시행령 제42조의6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 유지 의무를 함께 고려하여 정보를 전송하여야 한다.
- 정보수신자는 정보주체가 정보 전송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에 따라 정보 전송이 완료된 경우, 완료 화면을 구현하여 안내할 수 있다.

〈제3자전송요구에 따른 전송 완료 화면 예시〉



6) 전송 내역 관리

- 정보전송자와 정보수신자는 시행령 제42조의6제9항에 따라 전송 내역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 다만, 중계전문기관은 정보전송자의 전송 내역을 대신하여 보관할 수 있다.
- 이때 정보주체는 제3자전송요구에 따른 전송 내역을 정보수신자 또는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7. (정보주체, 해당 시) 전송 요구 변경·철회

- 정보주체는 보호법 제35조의2제5항, 시행령 제42조의5제5항에 따라 자신의 전송 요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때 정보전송자와 정보수신자는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 변경 및 철회의 방법·절차가 전송 요구 당시의 방법·절차보다 어렵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예를 들어 정보주체가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송을 요구하였다면 동일한 플랫폼에서 기존 전송 요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어야 한다.
- 특히, 변경·철회 과정에서 불필요한 확인 절차나 반복적인 의사 확인을 통해 정보주체의 변경·철회 요구를 방해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전송 요구 변경 화면 예시〉

3:13
뒤로 가기

전송요구서를 변경하시겠습니까?

전송 요구 목적	○○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전송 요구를 받는 자 (정보전송자)	B사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자 (정보수신자)	A사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 환자정보, 진단정보
정기적 전송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그 주기	☒ 정기적 전송/주1회
전송 요구의 종료시점	☒ 2025. 12. 15까지
보유 및 이용기간	○○개월(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최소기간)

변경하기

〈전송 요구 변경 화면 예시〉

3:13
뒤로 가기

전송 요구 철회 전, 개인정보 전송 요구 내역을 안내드립니다.

전송 요구 목적	○○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전송 요구를 받는 자 (정보전송자)	B사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자 (정보수신자)	A사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 환자정보, 진단정보
정기적 전송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그 주기	☒ 정기적 전송/주1회
전송 요구의 종료시점	☒ 2025. 12. 15까지
보유 및 이용기간	○○개월(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최소기간)

확인하고 전송 요구 철회하기

3:13
뒤로 가기

전송요구 철회전,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전송내역을 안내 드립니다.

전송 요구 목적	전송 요구를 통한 서비스 이용 목적
정보전송자 (전송 요구를 받는자)	B사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자	마이데이터서비스

전송요구 철회하기

해당 정보전송자에 대하여 정기적 전송 요구를 철회하시겠습니까? 언제든지 다시 전송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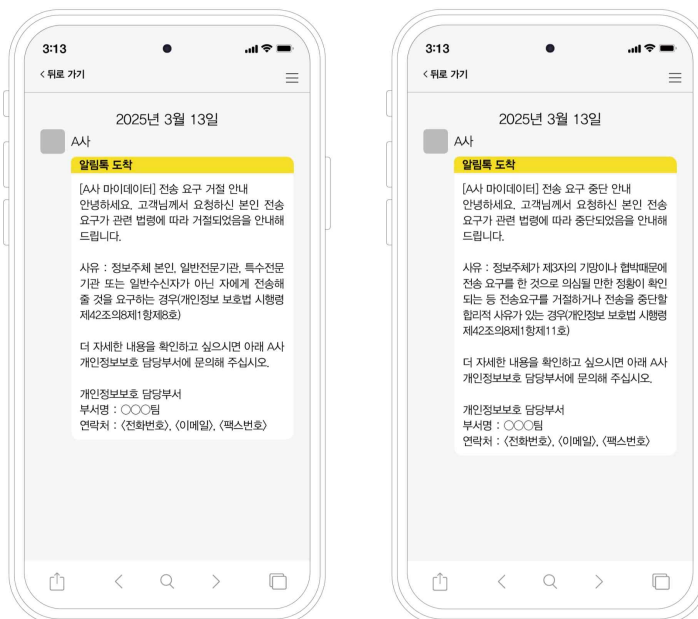
요청사까지

확인하고 동의 철회하기

8) (정보전송자, 해당 시) 전송 요구 거절·중단

- 정보전송자는 보호법 제35조의2제6항, 시행령 제42조의8에 따라 특정 상황에서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정보전송자는 시행령 제42조의8제1항의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제3자전송요구를 거절하거나 중단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또한 정보전송자는 시행령 제42조의8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실 및 그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때 정보전송자는 정보수신자인 제3자를 통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전송 요구 거절 및 중단 통지 화면 예시〉



2 개인정보 전송요구서 서식

■ 개인정보 전송 및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전송요구서

전송 요구 목적	
정보전송자 (전송 요구를 받는 자)	기관 · 법인 · 단체명(또는 명칭)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자	기관 · 법인 · 단체명(또는 명칭)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정기적 전송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그 주기	일반전문기관 및 특수전문기관에 대한 제3자전송요구를 하는 경우에 한정
전송 요구의 종료시점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전송을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작성 예시(Sample)

개인정보 전송요구서

전송 요구 목적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정보전송자 (전송 요구를 받는 자)	A사
개인정보를 전송받는 자	B사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고객정보, 가입정보, 이용정보, 청구정보
정기적 전송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그 주기	(정기적 전송 여부) 예 (정기적 전송 주기) 주 1회
전송 요구의 종료시점	1년
보유 및 이용기간	00개월(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 서비스 이용 종료 시 등

3 분야별 전송요구대상정보 정의서

1 보건의료전송정보

연번	정보 항목	세부 항목	정의
1	예방접종 정보	접종자 현황 (성명, 성별, 생년월일)	접종자의 성명, 성별 및 생년월일(YYYYMMDD)
2		접종일자	예방접종 일자(YYYYMMDD)
3		접종기관명	접종기관의 고유명칭 예) ○○병원
4		접종차수	예방접종 차수
5		예방접종명	예방접종 명칭 예) A형 간염
6	건강검진 정보	건강검진정보	국가건강검진(일반건강검진) 수검 결과 정보 예) 신체계측, 흉부방사선, 요검사, 혈액검사 결과 등
7		영유아건강검진정보	국가건강검진(영유아건강검진) 수검 결과 정보 예)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결과 등
8		암건강검진정보	국가건강검진(암검진) 수검 결과 정보 예) 위암(위내시경), 간암(간초음파), 대장암(분변잠혈검사), 유방암(유방촬영), 자궁경부암(자궁경부세포검사), 폐암(흉부CT) 검사 결과 등
9	진료내용 정보	대상자 현황	수진자 성명, 성별 및 생년월일(YYYYMMDD)
10		병의원/약국 명칭	병의원/약국 명칭 예) ○○병원, ○○약국
11		진료개시일	진료일자 또는 진료개시일자(YYYYMMDD)
12		진료형태	진료형태 예) 외래, 입원, 처방조제, 직접조제
13		방문입원일수	외래 또는 입원일수
14		처방횟수	처방횟수
15		본인부담금	본인이 납부한 금액(비급여 제외)
16		병의원 소재지	병의원/약국 소재지(주소)
17	투약이력 정보	조제일자	약품의 조제일자(YYYYMMDD)
18		약품코드	약품코드

연번	정보 항목	세부 항목	정의
19		약품명(제품명)	약품명(제품명)
20		성분코드	급여: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의 주성분코드 비급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한 비급여의약품목록의 주성분코드
21		함량	약품의 단위 예) 1정, 1캡셀 등
22		투약량	1회 투약하는 의약품량 예) 1알
23		투여횟수	1일 투여횟수 예) 3회
24		총투약일수	총 투약일수 예) 3일
25		환자정보	성명
26	성별		환자의 성별
27	생년월일		환자가 태어난 연, 월, 일(YYYYMMDD)
28	내원정보	내원 상태	내원 시 진료의 진행상태 ※ “완료(finished)” 결과만 제공
29		진료 구분	내원 시 진료방법 예) 외래(AMB), 응급(EMER), 입원(IMP)
30		내원 기간	환자의 내원기간 시작일자, 종료일자 (외래의 경우 진료일자 기재, 입원의 경우 해당 상병 진료를 위해 입원한 날 기재)
31	진단정보	진단 임상적 상태	질환의 진단 상태 예) 활성, 재발, 완치 등
32		진단명	진단한 질환의 명칭 예) 콜레라 등
33		진단 및 주호소 정보	주호소가 발생한 일자
			주호소의 명칭 예) 체중증가
			주호소의 현재 상태 예) 활성, 재발, 완치 등
34		진단 일자	진단이 기록된 일자
35	약물처방 정보	약물 처방 상태	처방한 약품의 처방 진행 상태 ※ “완료(completed)” 결과만 제공
36		약물 처방 의도	처방한 약품의 처방 의도 ※ “처방(order)” 결과만 제공

연번	정보 항목	세부 항목	정의
37		지침약 여부	기록된 정보가 아닌 환자를 통해 보고된 정보
38		약품 제품명	처방한 약품 명칭 예) 헵세데포정(아데포비어디피복실)(10mg/1정)
39		약물 처방 일시	처방전이 처음 작성되거나 작성된 일시
40		약물 투여 방법	처방한 약품의 복용법 예) 경구 등
41	수술 및 처치내역	수술 및 처치 상태	수술 및 처치의 진행 상태 ※ “완료(completed)” 결과만 제공
42		수술 및 처치명	수술한 수술 및 처치 명칭 예) 직장분변제거술, 도뇨[1회당]
43		수술 및 처치 일자	수술 및 처치 수행 일자
44	진단검사, 기타검사	진단검사 상태	수행한 검사의 진행 상태 ※ “최종보고(final)” 결과만 제공
45		검사구분(진단, 기타)	검사 구분 예) laboratory(진단), exam(기타)
46		검사 항목명	수행한 검사의 명칭 예) 요 일반검사[화학반응-육안검사/화학반응-장비측정], 7종까지
47		검사 일시	검사를 수행한 일시
48		검사 결과	수행한 검사에 대한 결과값
49		참고구간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 비교대상으로 사용할 값/단위 (정상범위)
50	알레르기 및 불내성	알레르기 및 불내성 원인 구분	원인물질 분류 예) 식품, 약물, 환경, 생물학적
51		알레르기 및 불내성 원인 물질	알레르기 불내성 유발 제품 예) 꽃가루
52		알레르기 및 불내성 기록 일시	알레르기 또는 불내증이 확인된 추정 또는 실제 일시
53		알레르기 및 불내성 반응	알레르기 불내성 증상 예) 가려움증
54		추가정보	다른 분야에서 포착되지 않는 이상반응 성향에 대한 추가 설명
55	영상검사, 병리검사	검사 상태	수행한 검사 진행 상태 ※ “최종보고(final)” 결과만 제공
56		검사 구분(영상, 병리)	검사 구분 예) IMG(영상), PAT(병리)

연번	정보 항목	세부 항목	정의
57		검사명	수행한 검사의 명칭 예) 세포병리검사-일반세포검사(자궁질세포병리검사)
58		검사 의뢰일	검사를 수행한 일자
59		검사 결과	수행한 검사 결과에 대한 기술 예) 영상검사 판독소견서, 결과보고서, 병리검사 세부 결과값 등 ※ 판독 결과만 제공

2 통신전송정보

연번	정보 항목	세부 항목	정의
1	고객정보	계약관리번호	통신 회선 고유번호 식별자
2		가입번호	정보주체의 통신 회선에 할당된 가입번호
3		통신구분	정보주체가 가입한 통신 서비스 상품의 구분 예) 휴대폰(이동단말기)
4		가입구분	정보주체의 가입 상태를 나타내는 구분(코드) 예) 정상 / 고객정지 / 연체정지 / 기타
5	가입정보	서비스요금제명	통신사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요금제명 예) 5G 슈퍼 요금제, LTE 요금제, 가족 요금제 등
6	이용정보	서비스이용연월	서비스 이용연월(YYYYMM)
7		서비스음성이용량	해당 연월에 발신으로 사용한 음성서비스 이용량(단위:분)
8		서비스문자이용량	해당 연월에 발신으로 사용한 문자서비스 이용량(단위:개)
9		서비스데이터이용량	해당 연월에 사용한 데이터 서비스 이용량(단위:KB)
10	청구정보	청구연월	청구정보의 대상연월 (YYYYMM)
11		청구금액	청구연월에 청구되는 요금액 (단위:원)
12		납부예정일자	청구정보에 등록된 납부 예정일자(YYYYMMDD)
13	납부정보	납부연월	납부정보의 대상연월(YYYYMM) * 납부금액의 기준식별자로 청구된 연월과 동일함
14		납부금액	납부연월에 납부한 납부금액 (단위:원)
15		납부수단	실제 납부방법(미납 시 공란) 예) 신용카드 / 계좌이체 / 지로 / 기타

4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요건 세부기준

① 중계전문기관

구 분		세부기준
1. 설비 및 기술		1) 전송 관리 및 연계, 전송 이력 관리 기능 - 전송요구서 관리, 전자서명 검증, 접근권한 인가 - 이용기관(정보전송자, 일반수신자,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연계 기능 -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과의 연계 기능 - 개인정보 전송 이력의 기록·보관 기능 ※ 중계 관련 시스템과 그 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분리 구축 2)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 및 보안시스템 구축 - 중계 관련 시스템의 네트워크 구축 - 중계 관련 시스템에 대한 침입탐지·차단 시스템 구축 3) 중계전문기관 업무의 가용성 및 연속성 보장을 위한 중계 관련 시스템 등의 이중화 구성, 모니터링, 통지 기능 - 중계 관련 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이중화 구성 - 중계 관련 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상시 모니터링 기능 - 중계 관련 시스템 장애, 오류 등으로 전송 중계 및 전송 지원이 불가한 경우 보호위원회 및 지정권자, 이용기관(정보전송자, 일반수신자,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대상 통지 기능
2. 보호체계	가. 보호정책의 수립·시행 및 점검	1) 전문기관 업무 관련 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 ※ 중계 관련 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취약점 점검 및 조치 방안,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안 포함 2) 개인정보 전송 이력의 기록·보관 및 점검 방안
	나. 접근권한의관리	3) 중계 관련 시스템의 주요 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접근 권한의 관리 및 점검 체계
	다. 접근통제	4)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중계 관련 시스템, 업무용 단말 등에 대한 접근통제 체계 - 중계 관련 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의 제한 등 접근통제 조치 - 중계 관련 시스템에 대한 외부 접속시 안전한 인증수단 등의 적용 5) 유출 및 해킹을 신속하게 탐지·대응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 - 유출 및 해킹 탐지 시스템, 네트워크 등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이상행위 분석·조사 등 조치 6) 중계 관련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관리용 단말기를 지정·관리하고, 중계 관련 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추가적인 인증수단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만 접속 가능하도록 조치 7) 중계 관련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관리용 단말기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 조치
	라. 암호화	8) 정보의 송·수신 등을 위한 안전한 암호화 적용 9) 암호 키의 안전한 관리 체계 - 안전한 암호 키 생성·이용·배포·보관, 파기 등에 대한 정책 및 절차의 수립·이행 - 암호·복호화 대상 시스템과 암호키의 분리

구 분		세부기준
	마.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10) 중계 관련 시스템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이상접속을 탐지하기 위한 조치 -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관 조치 - 자동화된 방식 등을 통한 접속기록의 분석 기능
	바.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11) 악성프로그램 등을 예방·탐지·대응하기 위한 조치 -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최신 업데이트 관리, 발견된 악성프로그램에 대한 삭제 등 조치
	사. 물리적 안전조치	12)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기 위한 물리적 안전조치
	아. 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13) 재난·재해 및 장애 등에 대비한 비상계획, 복구계획 및 훈련실시 방안 - 위기대응 매뉴얼 마련 및 정기적 점검 14) 중계전문기관 업무 관련 정보의 안전한 백업 및 복구 체계(소산 포함)
	자. 출력·복사시 안전조치	15) 개인정보, 전송요구서 등을 안전하게 이용·관리하기 위한 출력·복사시 안전조치 방안 - 개인정보 출력시(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용도의 특정 및 출력 항목 최소화
	차. 파기	16) 정보의 안전한 파기를 위한 조치 - 데이터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파기하는 등 조치
	카. 그 밖에 필요한 조치	17) 중계 관련 시스템의 가용성 및 연속성 보장을 위한 주요 지표 마련 및 관리 방안 18) 중계 관련 시스템 정비 및 프로그램 변경·이행 절차 19) 중계전문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및 담당인력 지정

② 일반전문기관

구 분		세부기준
1. 설비 및 기술		1) 전송 관리 및 연계, 전송 이력 관리 기능 - 전송요구서 관리 및 정보주체 인증 기능 - 중계전문기관과의 연계 기능 -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과의 연계 기능 - 개인정보 전송 이력의 기록·보관 기능 - 전송받은 정보의 분리·보관 기능 - 전송 내역, 전송받은 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내역의 중계전문기관을 통한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 제출 기능 2)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 및 보안시스템 구축 - 전송 요구 관련 시스템의 네트워크 구축 - 전송 요구 관련 시스템에 대한 침입탐지·차단 시스템 구축
2. 보호체계	가. 보호정책의 수립·시행 및 점검	1) 전문기관 업무 관련 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 ※ 전송 요구 관련 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취약점 점검 및 조치 방안,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안 포함 2) 개인정보 전송 이력의 기록·보관 및 점검 방안 3) 정보주체 대상 전송 내역의 통지 절차
	나. 접근권한의관리	4) 전송 요구 관련 시스템의 주요 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접근 권한의 관리 및 점검 체계
	다. 접근통제	5)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전송 요구 관련 시스템, 업무용 단말 등에 대한 접근통제 체계 - 전송 요구 관련 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의 제한 등 접근통제 조치 - 전송 요구 관련 시스템에 대한 외부 접속시 안전한 인증수단 등의 적용
	라. 암호화	6) 정보의 송·수신 등을 위한 안전한 암호화 적용
	마.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7) 전송 요구 관련 시스템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체계 -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관 조치
	바.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8) 악성프로그램 등을 예방·탐지·대응하기 위한 조치 -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최신 업데이트 관리, 발견된 악성프로그램에 대한 삭제 등 조치
	사. 물리적 안전조치	9)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기 위한 물리적 안전조치
	아. 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10) 재난·재해 및 장애 등에 대비한 비상계획, 복구계획 및 훈련 실시 방안 - 위기대응 매뉴얼 마련 및 정기적 점검 11) 정보의 안전한 백업 및 복구 체계
	자. 출력·복사시 안전조치	12) 개인정보, 전송요구서 등을 안전하게 이용·관리하기 위한 출력·복사시 안전조치 방안 - 개인정보 출력시(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용도의 특정 및 출력 항목 최소화
	차. 파기	13) 정보의 안전한 파기를 위한 조치 - 데이터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파기하는 등 조치

③ 특수전문기관

구 분		세부기준
1. 설비 및 기술		1) 전송 관리 및 연계, 전송 이력 관리 기능 - 전송요구서 관리 및 정보주체 인증 기능 - 중계전문기관과의 연계 기능 -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과의 연계 기능 - 개인정보 전송 이력의 기록·보관 기능 - 전송받은 정보의 분리·보관 기능 - 전송 내역, 전송받은 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내역의 중계전문기관을 통한 개인정보전송지원플랫폼 제출 기능 2)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 및 보안시스템 구축 - 전송 요구 관련 시스템의 네트워크 구축 - 전송 요구 관련 시스템에 대한 침입탐지·차단 시스템 구축
2. 보호체계	가. 보호정책의 수립·시행 및 점검	1) 전문기관 업무 관련 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 ※ 전송 요구 관련 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취약점 점검 및 조치 방안,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안 포함 2) 개인정보 전송 이력의 기록·보관 및 점검 방안 3) 정보주체 대상 전송 내역의 통지 절차
	나. 접근권한의관리	4) 전송 요구 관련 시스템의 주요 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접근 권한의 관리 및 점검 체계
	다. 접근통제	5)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전송 요구 관련 시스템, 업무용 단말 등에 대한 접근통제 체계 - 전송 요구 관련 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의 제한 등 접근통제 조치 - 전송 요구 관련 시스템에 대한 외부 접속시 안전한 인증수단 등의 적용 6) 유출 및 해킹을 신속하게 탐지·대응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 - 유출 및 해킹 탐지 시스템, 네트워크 등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이상행위 분석·조사 등 조치 7) 전송 요구 관련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관리용 단말기를 지정·관리하고, 전송 요구 관련 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추가적인 인증수단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만 접속 가능하도록 조치 8) 전송 요구 관련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관리용 단말기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 조치
	라. 암호화	9) 정보의 송·수신 등을 위한 안전한 암호화 적용 10) 암호 키의 안전한 관리 체계 - 안전한 암호 키 생성·이용·배포·보관, 파기 등에 대한 정책 및 절차의 수립·이행 - 암호·복호화 대상 시스템과 암호키의 분리
	마.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11) 전송 요구 관련 시스템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이상접속을 탐지하기 위한 조치 -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관 조치 - 자동화된 방식 등을 통한 접속기록의 분석 기능

구 분	세부기준
바.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12) 악성프로그램 등을 예방·탐지·대응하기 위한 조치 -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최신 업데이트 관리, 발견된 악성프로그램에 대한 삭제 등 조치
사. 물리적 안전조치	13)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기 위한 물리적 안전조치
아. 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14) 재난·재해 및 장애 등에 대비한 비상계획, 복구계획 및 훈련실시 방안 - 위기대응 매뉴얼 마련 및 정기적 점검 15) 정보의 안전한 백업 및 복구 체계
자. 출력·복사시 안전조치	16) 개인정보, 전송요구서 등을 안전하게 이용·관리하기 위한 출력·복사시 안전조치 방안 - 개인정보 출력시(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용도의 특정 및 출력 항목 최소화
차. 파기	17) 정보의 안전한 파기를 위한 조치 - 데이터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파기하는 등 조치

전 분야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안내서

발 행 일 2025년 4월
발 행 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원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디 자 인 호정씨앤피, (주)모아베이



여성기업

※ 최신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pipc.go.kr)”,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안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